

창조경제를 위한 충남도의 창업·벤처기업 육성
방안(자금지원 중심으로)

2014. 01

김 홍기(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16
제2장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실태	18
1. 창업벤처기업의 개념과 특징	18
2. 창업벤처기업의 기능과 역할	20
3.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과 실태	23
4. 충남지역 벤처기업 실태	38
제3장 벤처투자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47
1. 벤처캐피탈의 개념과 특징	47
2. 우리나라 벤처투자금융	49
3. 충남도의 벤처금융 현황	57
4. 벤처투자금융의 문제점	58
제4장 국내외 창업벤처기업 육성정책	61
1. 해외 창업벤처정책	61
1) 미국	61
2) 이스라엘	72
3) 핀란드	75
2. 우리나라 창업벤처정책	79
1) 일반지원정책	79
2)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노력	81
3)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87
4) 한국은행의 기술형 창업지원제도 제도	89
제5장 충남도의 창업벤처기업육성 전략	91

1.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 설립	91
2. 충남지역 기반의 벤처캐피탈 설립	96
3. 지역벤처조합 설립	99
4. 중앙정부와 대기업과의 협력	104
부록	112
부록1. 크라우드펀드	112
부록2.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체계	114
부록3. 창업투자회사·조합에 대한 지원제도	116
참고문헌	117

〈표 차례〉

〈표2-1〉 벤처기업의 유형별 기준조건	19
〈표2-2〉 우리나라 GDP와 벤처기업 총 매출액 현황 (단위: 조원, %)	21
〈표 2-3〉 벤처기업 재무현황	27
〈표 2-4〉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비교(2012년)	28
〈표 2-5〉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29
〈표 2-6〉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단위:%>	30
〈표 2-8〉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단위:%>	34
〈표 2-9〉 충청남도의 일반현황	38
〈표 3-1〉 중점지원펀드 결성 및 투자실적 (단위: 개, 억원)	52
〈표 3-2〉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55
〈표 4-1〉 미국 start-up 이니셔티브 조치	65
〈표 4-2〉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79
〈표 4-3〉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방안	84
〈표 4-4〉 기술형창업기업의 범위	89
〈표5-1〉 엔젤매칭펀드 운용 현황	94
〈표5-2〉 충청남도 관련 투자조합 현황	99
〈표5-3〉 1차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및 운용	109
〈표5-3〉 충청남도 관련 투자조합 투자 실적	100
〈표5-4〉 충청남도 관련 투자조합 운용 실적	101
〈표5-5〉 투자조합 유형별 비교	102
〈표5-6〉 충남벤처투자조합 설립방안	104

<그림 차례>

<그림 2-1>기업규모별 고용증가율	20
<그림 2-2> GDP대비 벤처기업의 매출액 비중 추이	22
<그림 2-3> 전국 벤처기업수	23
<그림 2-4> 유형별 벤처기업수	24
<그림 2-5> 천억벤처기업수 추이	24
<그림 2-7> 벤처기업 8대 업종분포 현황	25
<그림 2-8> 대표이사 연령분포	26
<그림 2-9> 창업당시 창업주 연령	26
<그림 2-10> 기업 성장단계	27
<그림 2-11>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비교	29
<그림 2-12>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31
<그림 2-13> 매출구조<단위:%>	31
<그림 2-14> 벤처기업의 수출 여부	32
<그림 2-15> 정책자금 수령 경험 및 금액	32
<그림 2-17>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 <단위:%>	35
<그림 2-19> 경영 애로사항	37
<그림 2-20> 지역별 벤처기업수	39
<그림 2-21> 충남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	39
<그림 2-22> 충남지역 업종별 벤처기업수	40
<그림 2-23>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재무상황	40
<그림 2-24> 충남지역과 전국의 벤처기업의 재무구조비교	41
<그림 2-25>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매출액	41
<그림 2-26>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자금애로(%)	42
<그림 2-27> 충남벤처기업 자금조달 방법	42
<그림 2-28> 전국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42
<그림 2-29> 충남 벤처기업의 투자 경험여부	43

<그림 2-30> 전국 벤처기업의 벤처투자 경험 여부(%)	43
<그림 2-31> 지역별 벤처기업의 매출액	44
<그림 2-32> 지역별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	45
<그림 2-32> 충남지역과 전국의 벤처기업의 평균 근로자수	45
<그림 3-1>창투사의 등록 추이	48
<그림 3-2> 투자조합수 및 조합결성금액 추이	49
<그림 3-3> 벤처투자잔액 추이	49
<그림 3-4> 업종별 벤처투자금융잔액 비중	50
<그림 3-5> 업력별 벤처투자금융잔액 비중	51
<그림 3-6> 투자유형별 벤처투자금융잔액 비중	51
<그림 3-7> 지역별 벤처투자잔액	53
<그림 3-8> 업력별 벤처투자잔액 비중	54
<그림 3-9> 벤처투자액 추이	54
<그림 3-10> 회수금액 추이	56
<그림 3-11> 유형별 회수비율 추이	56
<그림 3-12> 충남도의 벤처투자잔액 추이	57
<그림 3-13> 충남도의 벤처투자 추이	58
<그림 4-1> 중소기업 자금조달원별 자금 공급(2012년)	82
<그림 4-2> 국내엔젤투자규모 추이와 미국과의 비교	83
<그림 5-1> 엔젤매칭펀드 신청절차	93
<그림 5-2> 모태펀드 운영구조	105
<그림 5-3> 성장사다리펀드 구조	108

요약본

제1장 서론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란 독자적인 신기술·아이디어,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척해 나가면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갖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래 산업의 발골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도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의 기술 및 지식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축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1,963개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9월 현재 29,044개로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2006년 89억이던 것이 2011년말 기준 18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의 성장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2013년9월 현재 971개로 전국 대비 3.34%에 불과해 전국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총생산이 전국 3위이고 중소기업종사자수가 전국 4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하여 벤처기업의 지역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 평가된다. 따라서 지역차원의 벤처기업의 육성은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충남지역의 벤처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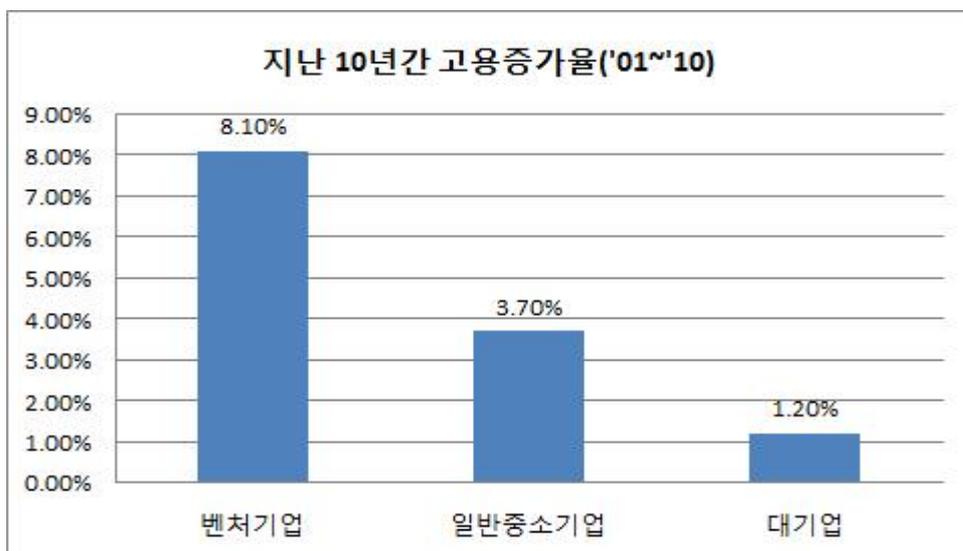
금지원을 중심으로 창업→성장→재투자 등 창업벤처자금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역적인 차원에서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적합한 투자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실태

1.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능

창업·벤처기업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벤처 창업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높은 고용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지난 10년간(2001~2010) 일반 중소기업의 2배 이상, 대기업의 6.5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벤처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8.1%로 일반 중소기업 3.7%, 대기업 1.2%에 비해 크게 높아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의 2배 이상, 대기업의 6.5배 이상 고용을 창출하여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벤처기업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18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GDP대비 벤처기업의 매출액 비율이 7.5%이던 것이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3%로 크게 높아졌고 2012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14.7%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창업벤처기업은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주체로 역할하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벤처기업은 지역의 기술지식자본을 축적하고 기업가정신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한다.

2. 벤처기업의 현황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단계별로 보면, 초기단계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도성장기, 성숙기의 순이다. 초기성장기가 4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도성장기(26.4%), 성숙기(21.5%), 창업기(10.1%), 쇠퇴기(0.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다. 업력은 4년에서 10년 이하가 전체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창업한지 3년 이하도 27.1%로 조사되어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셋째, 재무상황은 2012년 12월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0.6%, 부채비율은 146.1%로 자기자본비율은 대기업보다 낮고 전체 중소기업보다는 높다. 그리고 부채비율은 대기업보다 높고 전체중소기업보다 낮다. 따라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벤처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5.8%으로 대기업 5.0%, 일반중소기업 5.3%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5.7%, 3.4%로 모두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평균 7.9억원이고 이의 자금은 정부정책 지원금(53.3%)과 은행 등 일반금융(17.4%)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캐피탈 및 엔젤투자는 0.8%, 회사채 발행은 0.3%, IPO는 0.2%로 매우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벤처기업들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는 대부분(96.0%)이 경험이 없고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충남지역의 벤처기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수 측면에서 충남도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취약하다.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수는 971개로 전국 대비 3.34%를 차지하며, 전국 9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충남벤처기업은 창업기업이 41.7%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고 다음으로는 고도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35.4%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기타, 그리고 정보처리S/W등의 순이다.

셋째,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평균 자본규모는 35.2억원이고 부채는 42.8억원 그리고 자산은 78억원으로 조사되고 있다(2012년말 기준). 이러한 수치는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큰 수치이다. 따라서 재무상황의 측면에서 충남도의 벤처기업은 전국평균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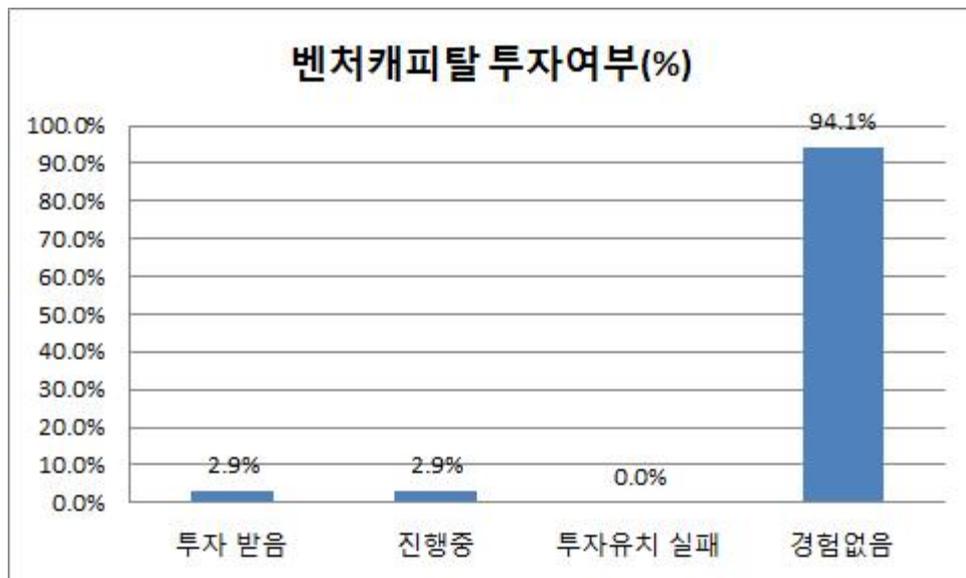
넷째,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보면 자기자본비율은 45.1%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부채비율은 121.6%로 전국평균에 비해 낮

아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012년 말 현재 104억원으로 전국 평균 67.1억원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섯째,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자금애로사항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충남벤처기업들은 자금애로사항에 대해 64.8%가 그렇다 이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벤처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로 전국 평균 6.5%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제3장 벤처투자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벤처투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 벤처붐과 더불어 벤처투자금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IT 버블 붕괴와 더불어 벤처투자금융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의

확대로 벤처투자잔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9월 현재 벤처투자잔액은 2,718개 업체에 4조 2,34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투자조합수는 2003년 430개를 최고로 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333개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9월 현재 424개에 이르고 있다. 2013년9월 현재 조합결성금액은 9조8648억원에 이르고 있다.

둘째로 투자가 주로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의 벤처투자는 매우 저조하고 취약하다. 지역별 투자잔액을 살펴보면 ‘13.9기준 서울(41.2%), 경기(26.3%) 등 수도권이 71.0% 차지하여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남은 2.4%로 대전 4.1%, 충북 3.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로 충남도의 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9월 현재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1,094억 원. 전국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의 투자잔액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벤처투자금융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취약하지만 특히 충남지역은 더욱 취약한 수준이다.

제4장 국내외 창업벤처정책

선진국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랜 창업문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민간 주도형 창업문화가 정착된 창업 선진국이다. 특히 '90년대 들어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벤처창업 형성과 순환을 통한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창업국가를 지향하는 대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마련하여 창업열기를 더하고 있다. 벤처생태계 조성의 중심에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자리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창업 생태계는 두텁고 효율적인 벤처캐피탈 시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인데, 미국에서는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에 의해 창업(seed)·초기단계(early stage)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M&A를 통한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이스라엘은 정부주도로 하이테크 창업과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GDP 대비 R&D 비중과 1인당 창업 수, 그리고 1인당 벤처투자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하고 NASDAQ 상장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창업단계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스라엘은 민간 엔젤 투자자와 엔젤 그룹이 활발히 활동하여 창업 예비 단계와 창업 단계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스라엘정부는 2011년 창업단계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외국 엔젤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엔젤 법(Angel Law)” 제정하였다. 또한 TIP를 운영하여 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고 요즈마펀드를 조성하여 정부와 민간이 단순히 위험을 분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투자자가 정부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어 상향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R&D를 장려하는 등 혁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가별 GDP대비 R&D투자비중은 3.84%로 이스라엘(4.25%)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국가별연구

원수는 1000명당 15.7명으로 35개국 중 가장 높다. 핀란드는 R&D 투자, 교육 경쟁력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고성장 기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적극적인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단계에서 벤처캐피털 시장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공적 투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핀란드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정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산학융합형 창업보육모델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는 산학융합형 창업보육모델을 근간으로 산·학·연이 물리적으로 근접하여 효과적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벤처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교수·연구원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창업지원,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 등에서의 우대를 포함한 금융지원, 법인세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상 특례, 스톡옵션, M&A지원 등이 있으며, 기타 방송광고요금 및 전력요금 할인 등이 있다.

2013년 5월, 정부부처합동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조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의 중요한 목표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유인제도 도입, 그리고 새로운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에는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① 선도적 모험자본 투자기능 활성화, ② 개방적 운용자 규제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③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방안, ④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5장 충청남도의 창업벤처기업육성 전략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청도 차원의 투자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소에서는 충청도 차원의 투자금융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력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엔젤매칭펀드를 설립한다. 둘째, 충청남도 기반의 벤처캐피탈을 설립한다. 셋째, 지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투자금융활동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의 설립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자금은 50억원으로 하고 한국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태펀드에서 40억원, 충청도를 비롯한 지역차원에서 10억원을 조성한다. 지역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은행, 그리고 충남벤처투자협회에서 출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충남테크노파크가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벤처캐피탈의 설립 요건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전문인력, 자본금 조달, 벤처캐피탈 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이다.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투사의 경우에도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은행의 경우는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을 인수하였고 최근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은행 역할강화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하나은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금고역할을 하는 은행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기업의 출자로는 대기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현대제철이나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한화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이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설득하고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활동을 통해 재력을 축적한 지역기업인의 참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한편 충남지방자치단체도 충남통상진흥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 등 간접적인 방

법을 통해 일정 정도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충남도 차원에서 투자조합결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지역투자조합이나 타 투자조합의 출자금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절한 출자금 규모는 200억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자금은 충남도에서 TP를 통해 일정 정도(30억원)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 대기업, 은행, 상공회의소, 충남벤처기업협회 그리고 개인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모태조합과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용사(GP)는 지역벤처캐피탈이 수행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벤처캐피탈의 설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지역 소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는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공사의 성장사다리펀드 등 중앙정부의 공적자금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벤처캐피탈이나 지역투자조합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적극 지역차원의 계획이나 유망기업의 소재를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매년 막대한 벤처자금, R&D 자금이 지역내 기업에 제공되고 있으나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충남도가 중앙부처와의 주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공동 R&D 설명회, 공동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면 지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융활동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내 대기업은 벤처기업에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중간재를 포함한 생산물품의 구매처로서 다른 하나는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의 M&A를 통한 회수창구로서 역할한다.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벤특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지분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충남도가 노력하여 대기업의 M&A를 몇건만 성사시키면 지역차원의 M&A생태계가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벤처기업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신기술·아이디어,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의미한다. 이러한 벤처기업은 고용창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미래 산업의 발굴은 물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도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에서의 기술 및 지식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축적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1,963개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9월 현재 29,044개로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2006년 89억이던 것이 2011년 말 기준 18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의 성장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2013년9월 현재 971개로 전국대비 3.34%로 전국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총생산이 전국 3위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가 전국 4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벤처기업의 육성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융자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패에 따른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M&A 형태의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이후 회수하는 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라는 순환구조가 막혀 있는 벤처자금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액은 잔액기준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9월 현재 2718개 업체에 4조2,34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금액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금액이다.

충남지역에 대한 벤처투자는 잔액기준으로 94개 업체에 대한 1,094억원으로 전국대비 2.6%를 차지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충남도 차원에서 창업·벤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능토록 하고 나아가 지역의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주체로 역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부족한 경영능력과 마케팅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자금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창업벤처기업은 초기단계에서 자금대출을 위한 담보가 부족하고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금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소위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자금의 공급이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특히 창업벤처기업들에게 과도한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자금 이외의 각종 경영기법이나 노우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충남벤처기업들은 자금애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차원에서 벤처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충남지역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이 전무하고 또한 지역엔젤매칭투자펀드도 설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자금생태계 확립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충남지역의 벤처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창업→성장→재투자 등 창업벤처자금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위험 고수익의 특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 적합한 금융은 투자금융이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투자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세부 목적으로 한다.

첫째, 충남지역에 기반을 둔 창투사의 설립 조건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의 타당성과 이의 실현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최근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엔젤매칭펀드설립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충남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벤처금융활성화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충남지역 소재 창업벤처기업들이 투자재원을 활용하도록 한다.

넷째, 충남도의 전반적인 창업벤처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창업벤처기업들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금융순환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내 창업벤처기업과 대기업과의 상생을 촉진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한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하고 정리한다. 창업벤처기업은 고용, 신산업창출, 경제발전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발굴과 기술 및 지식의 축적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와 충남의 벤처기업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본다. 벤처기업수의 추

이를 타시도와 비교하고 나아가 경영애로사항, 그리고 매출, 고용 등 벤처기업의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와 충남도 차원에서의 벤처투자의 실태를 분석한다. 특히 지역별 벤처투자의 추이와 분포 그리고 투자 업종 등을 분석한다.

넷째, 국내외 창업벤처산업 육성정책을 분석한다. 창업벤처생태계가 잘 구비되어 있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핀란드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정책 분석을 분석한다. 특히 벤처투자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나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금융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이로서 지역엔젤매칭펀드조성, 지역기반의 벤처캐피탈 설립, 투자조합 설립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유도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실태

1. 창업벤처기업의 개념과 특징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험성은 크지만(high risk)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high return)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김세중(2009)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 출발했지만 독자의 존재이유를 가지며, 경영자 자신이 고도의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업가정신이 넘치며, 고수익 및 급성장의 특성을 가진 기업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서 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위험성은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며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기완(2011)은,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이란 실질적으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창업기업(start-up)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벤처기업을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 R&D 투자비율이 전체 매출액 3% 이상인 기업이며 창업 후 5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OECD에서는 벤처기업을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2013년 현재 벤처기업을 (1) 벤처투자를 받은 벤처기업 (2) 연구개발 벤처기업 (3) 기술평가보증 벤처기업 (4) 기술평가대출 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각 유형별 벤처기업의 기준조건은 <표2-1>와 같다.

<표2-1> 벤처기업의 유형별 기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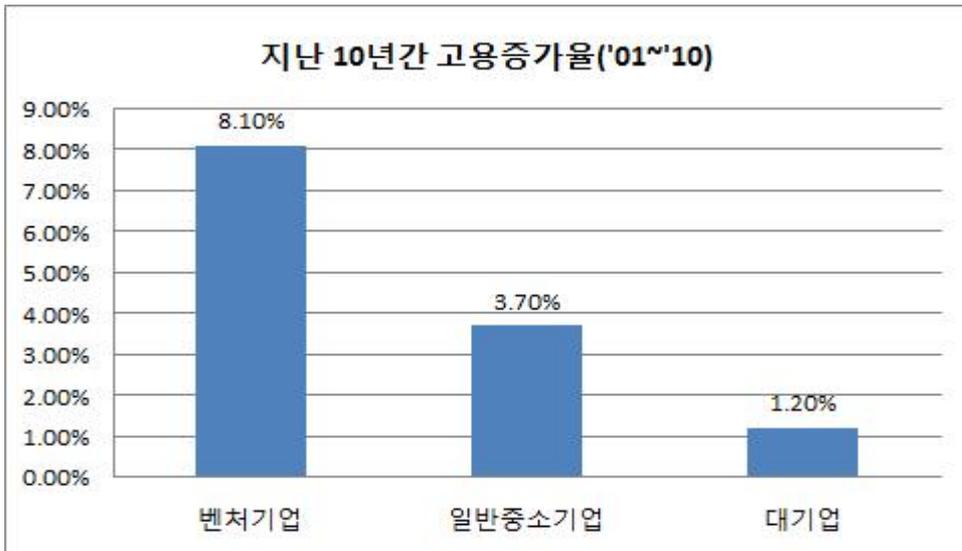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준 요건	확인기 관	평가기관
벤처 투자 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 이고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 벤 처 캐 피탈 협회	
연구 개발 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하고 업력별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연구개발기업 사 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 비비율 적용제외)	기술 보 증 기금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 단, 정보통신산 업진흥원, 한국 발명진흥회, 한 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 원, 산업은행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 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 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보 증 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대출기업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보증 또 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중소기업진흥공 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별로 정의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벤처기업은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과 창업가정신을 통해 혁신과 창의력으로 높은 성장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벤처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지만, 짧은 업력으로 자금력 부족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로 높은 위험에 상응하는 고수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로 연구개발이나 지식집약형 기업으로 첨단산업분야의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넷째,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경영진 구성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인적자산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료적 조직보다는 시장에서의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태적 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2. 창업벤처기업의 기능과 역할

벤처 창업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높은 고용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은 지난 10년간(2001~2010) 고용증가율이 8.1%로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아래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중소기업은 3.7% 고용창출을 하였고 대기업은 1.2% 고용 창출을 하는데 불과하였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의 2배 이상, 대기업의 6.5배 이상 고용을 창출하여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2-1>기업규모별 고용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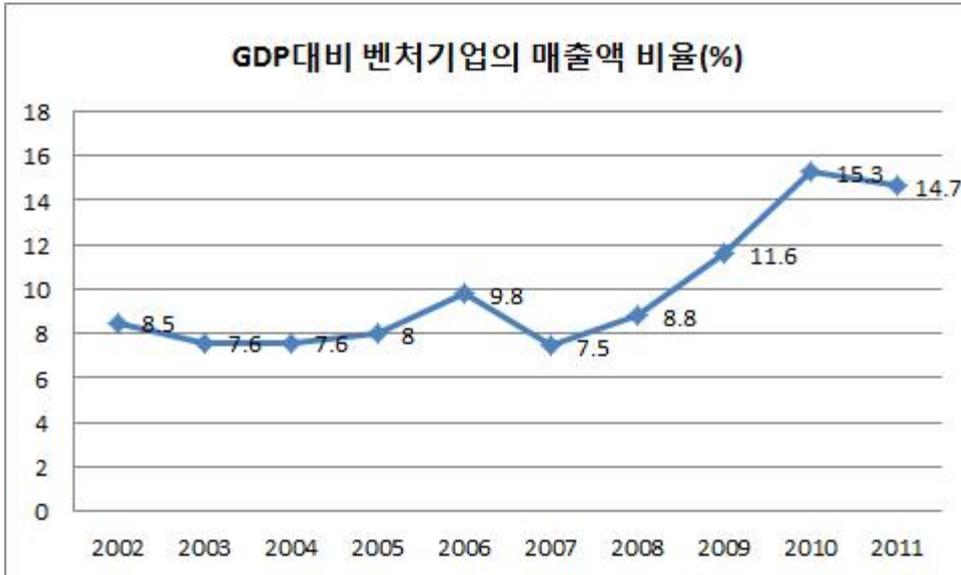


둘째로 벤처기업은 국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말 기준으로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은 18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8%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GDP대비 벤처기업의 매출액 비율이 7.5%이던 것이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5.3%로 크게 높아졌고 2012년에는 약간 감소하였지만 14.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3%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7%인데 반해, 벤처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5.4%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21.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2-2> 우리나라 GDP와 벤처기업 총 매출액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연평균 증가율	
											('06~'11)	('09~'11)
GDP	721	767	827	865	909	975	1,026	1,065	1,173	1,235	6.3%	7.7%
벤처기업 총매출	61	58	63	69	89	73	90	124	180	182	15.4%	21.2%
GDP 대비 벤처 총매출액 비율 (%)	8.5	7.6	7.6	8.0	9.8	7.5	8.8	11.6	15.3	14.7	8.4%	12.6%

<그림2-2> GDP대비 벤처기업의 매출액 비중 추이



셋째, 벤처기업은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 특히 벤처기업은 모방형 기술개발보다는 혁신형 기술개발을 시도하여 주요 기술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특히 컴퓨터, 전자 및 통신, 생명공학 및 의료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정보화 사회의 기반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경제는 생산자체가 규모의 경제 중심에서 질적 생산 중심, 대형화에서 소형화, 집중화에서 분산화,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 신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보다 적합하다.

넷째, 벤처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주도한다. 재료비, 인건비, 에너지 절약 등 직접적인 효율성만이 아니라 불량률 감소, 공정 단축 및 자동화 등에 의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창업·벤처기업은 시장의 집중과 독과점을 완화시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기업은 지역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벤처기업은 지역의 노동 및 자본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혁신활동으로 기술지식자본을 축적하고 기업가정신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벤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애플과 구글의 무선통신 혁명,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 주도과 바이오, 태양광 등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미국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3.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과 실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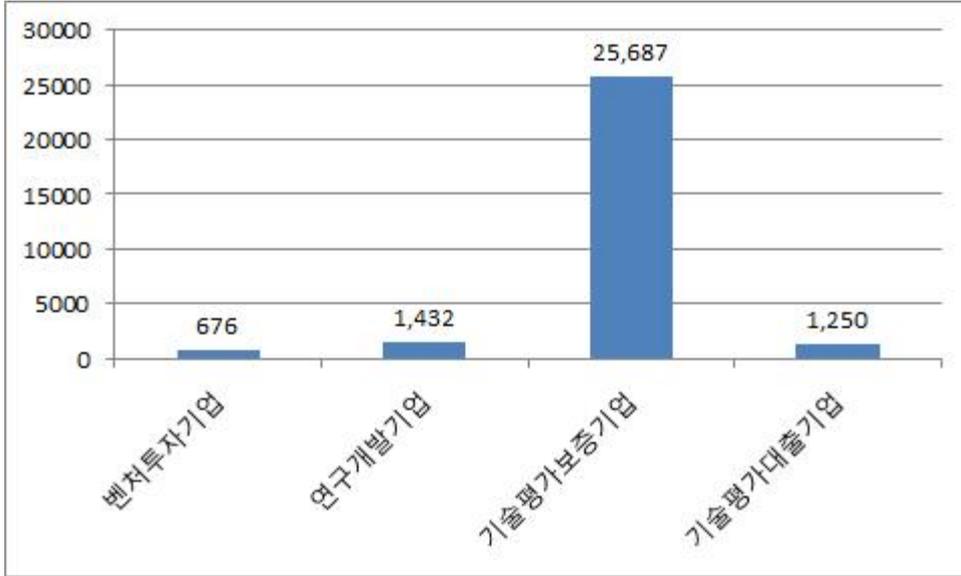
우리나라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1,963개에서 2000년대 후반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9월 현재 29,044개로 2.4배 증가하였다(<그림2-3> 참조). 이는 2006년에 개편된 벤처확인제도에 기인한 바 크다. 개편된 벤처확인제도에 따르면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데, 그 중 92.3% 기업들이 기술평가·보증기업유형에 의한 벤처확인을 받고 있다(<그림2-4> 참조).

<그림 2-3> 전국 벤처기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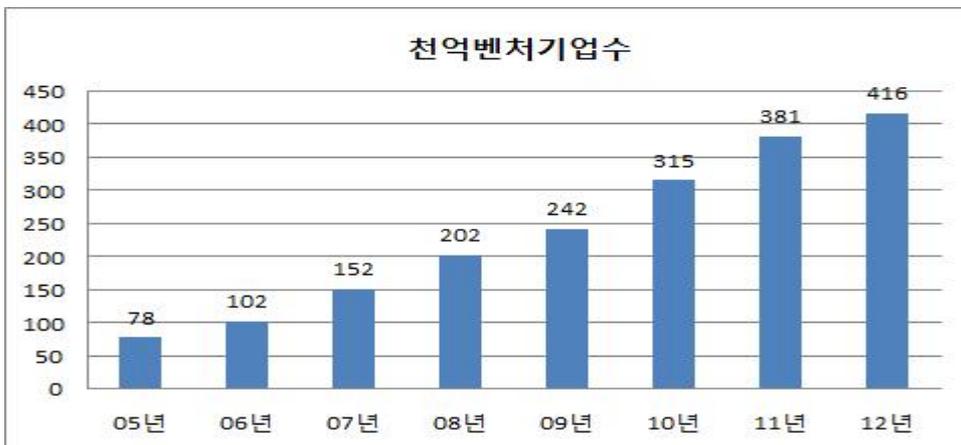
1) 중소기업청(2013)의 벤처기업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의거하였음

<그림2-4> 유형별 벤처기업수



벤처기업 중에서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의 한 예로 천억벤처기업수를 들 수 있는데 2006년 102개에서 2012년 416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벤처천억기업의 업종분포는 기계/제조/자동차 관련 업종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 24.1%, 음식료/섬유/(비)금속이 2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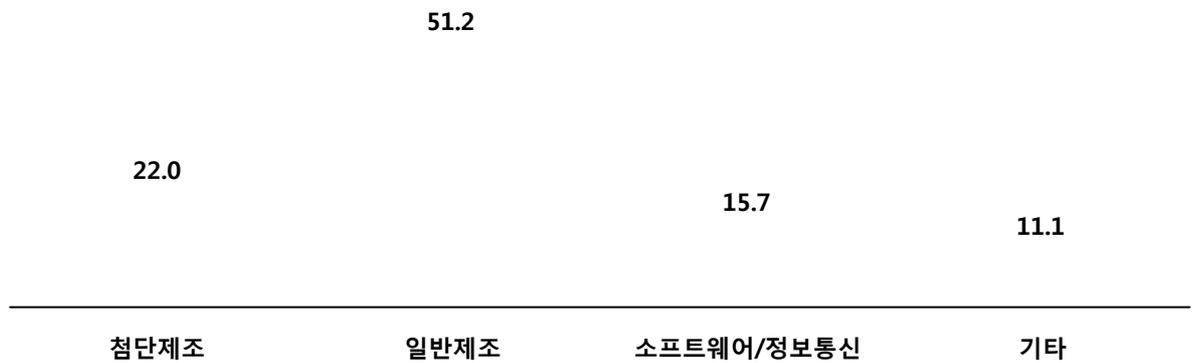
<그림 2-5> 천억벤처기업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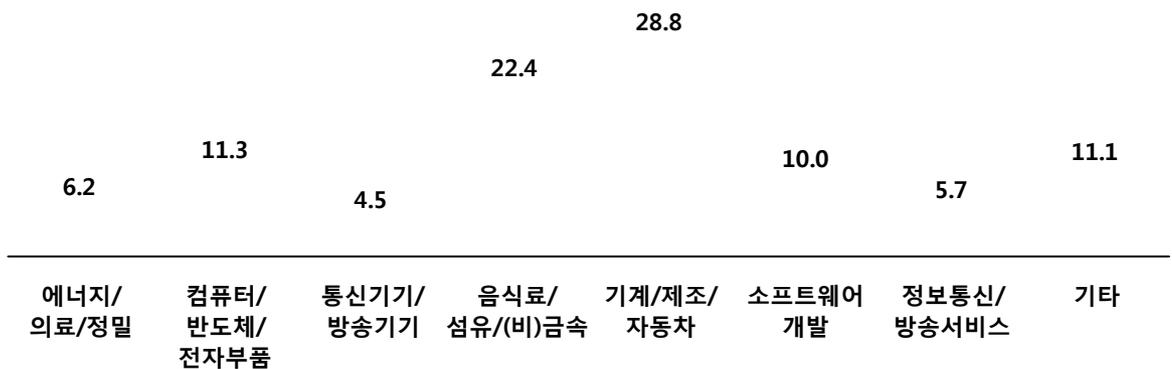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분류에 따른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제조가 51.2%로 가장 많고, 첨단제조가 22.0%, 소프트웨어/정보통신이 15.7%, 기타 11.1% 순이다. 그리고 8대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계/제조/자동차가 28.8%로 가장 많고, 음식료/섬유/(비)금속이 22.4%,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1.3% 등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2-6> 벤처기업 4대 업종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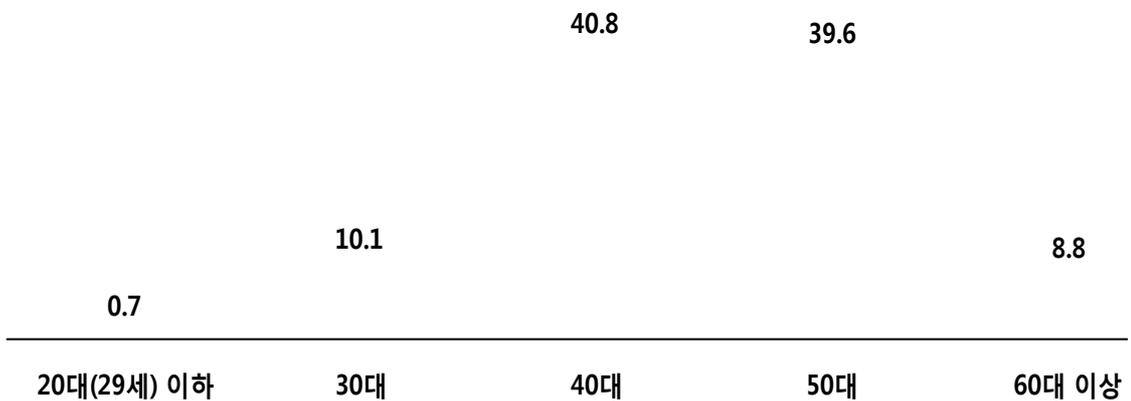


<그림 2-7> 벤처기업 8대 업종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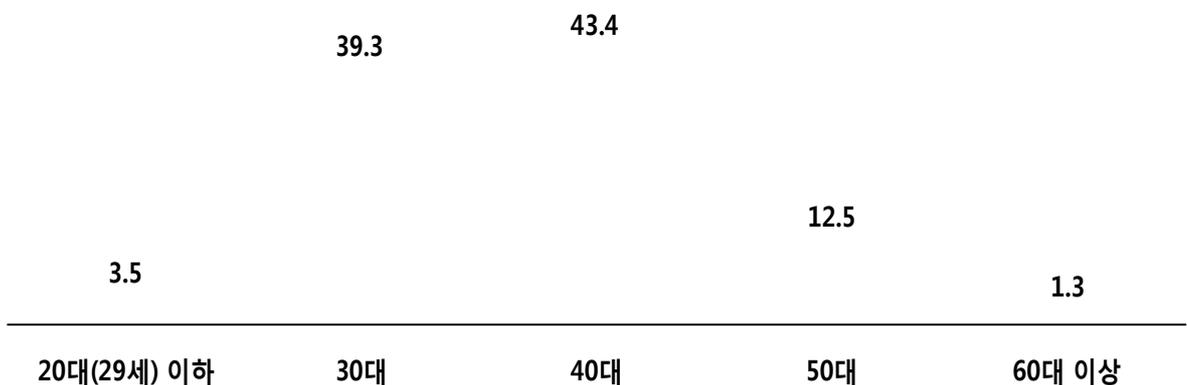
벤처기업 대표 이사의 연령분포는 40대가 4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가 39.6%, 30대가 10.1%, 60대 이상이 8.8%, 20대는 0.7%으로 조사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는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8> 대표이사 연령분포



벤처기업 창업당시 창업주의 연령은 40대가 43.4%로 가장 많고, 30대가 39.3%, 50대 12.5%, 20대 이하 3.5% 순으로 조사되고 있어 창업은 대부분 30~40대에 이룬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9> 창업당시 창업주 연령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살펴보면 초기성장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도성장기, 성숙기의 순이다. 초기성장기가 4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도성장기(26.4%), 성숙기(21.5%), 창업기(10.1%), 쇠퇴기(0.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업력은 4년에서 10년 이하가 전체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창업한지 3년 이하도 27.1%로 조사되어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2-10> 기업 성장단계



벤처기업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의 2012년 12월말 기준 기업당 평균 자본은 22.9억원, 부채가 33.4억원, 자산은 56.2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은 40.6%, 부채비율은 146.1%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벤처기업 재무현황 <단위: 만원, %>

구분	2011년(n=1,906)	2012년(n=1,989)	증가율 ²⁾
자본	207,285	228,490	14.5
부채	308,495	333,922	12.3
자산	515,780	562,412	13.2
자기자본비율 ³⁾	40.2	40.6	-
부채비율 ⁴⁾	148.8	146.1	-

2) 2012년 창업기업 제외
 3) 자기자본비율=(자본/총자산)×100
 4) 부채비율=(부채/자본)×100

벤처기업의 재무상황을 대기업이나 타 중소기업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41.6%이고 전체중소기업은 36.5%이다. 그리고 부채비율은 대기업은 140.1%이고 중소기업전체는 174.3%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자기자본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낮으나 중소기업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부채비율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인 측면에서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비교(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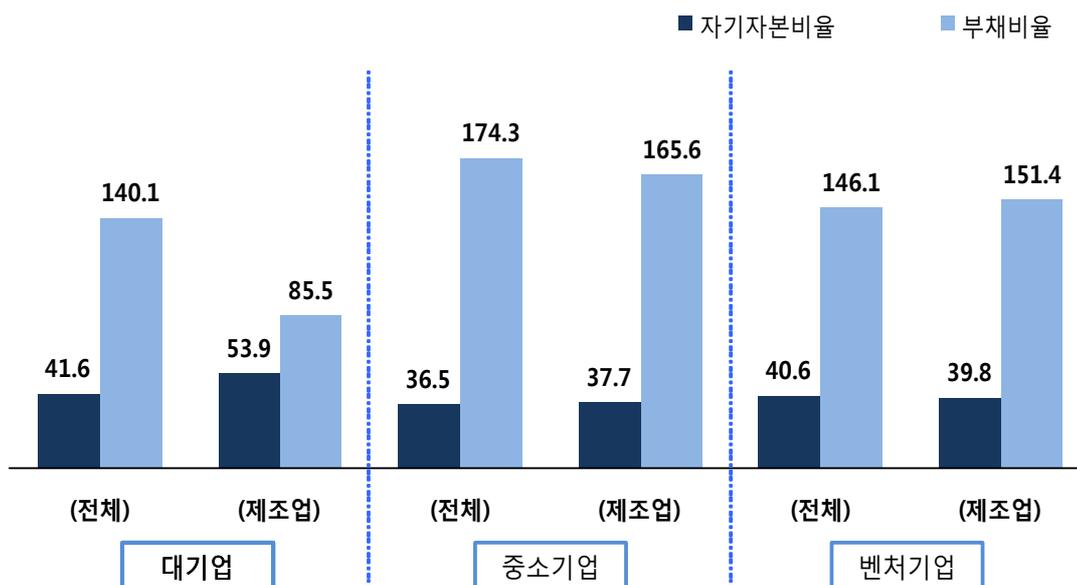
<단위:%>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자기자본비율	41.6	53.9	36.5	37.7	40.6	39.8
부채비율	140.1	85.5	174.3	165.6	146.1	151.4

주)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실태조사

주) 벤처기업 2012년 창업기업 제외

<그림 2-11>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 비교



다음에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벤처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7.2억원이고, 영업이익이 3.8억원, 순이익은 2.3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벤처기업 경영성과 현황

<단위: 만원, %>

구분	2011년 (n=1,906)	2012년 (n=1,989)	증가 율 ⁵⁾
매출액	602,452	671,896	15.8
영업이익	28,961	38,050	34.6
금융비용(이자비용)	11,324	12,704	17.2
순이익	18,236	22,997	27.8
매출액영업이익률 ⁶⁾	4.8	5.7	-
매출액순이익률 ⁷⁾	3.0	3.4	-

5) 2012년 창업기업 제외

6)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7) 매출액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100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대기업과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전체)의 매출액증가율은 15.8%으로 대기업 5.0%, 일반중소기업 5.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은 각각 5.7%, 3.4%로 모두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6>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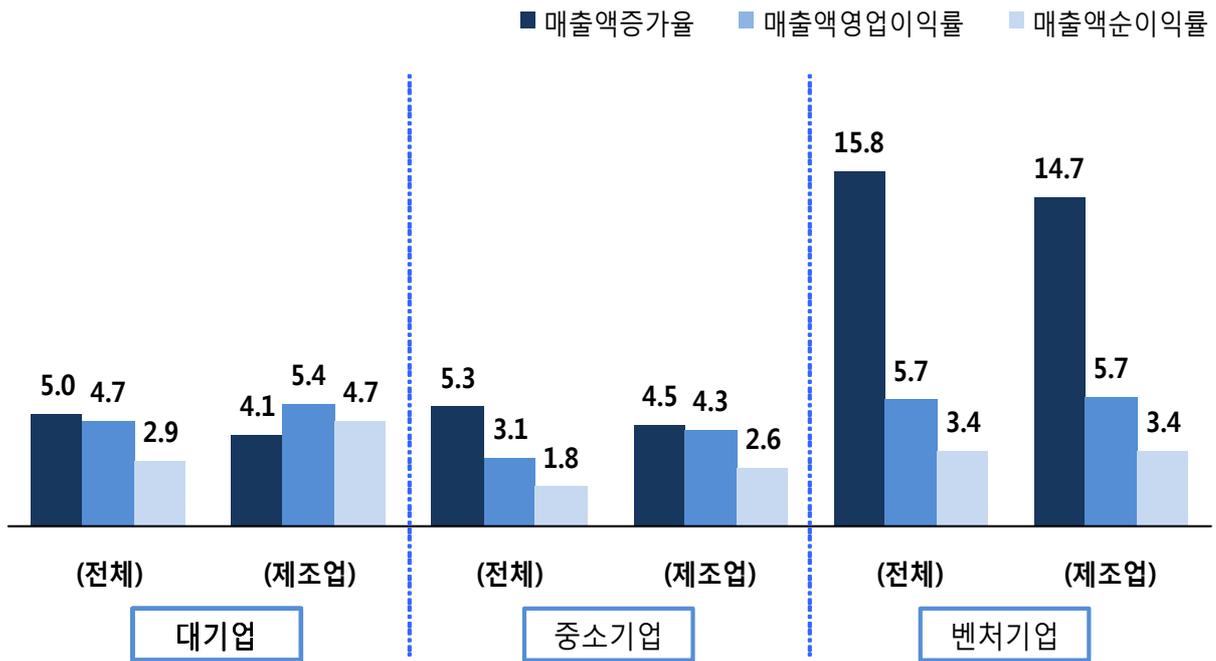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5.0	4.1	5.3	4.5	15.8	14.7
매출액영업이익률	4.7	5.4	3.1	4.3	5.7	5.7
매출액순이익률	2.9	4.7	1.8	2.6	3.4	3.4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출처: 2012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주) 벤처기업 2012년 창업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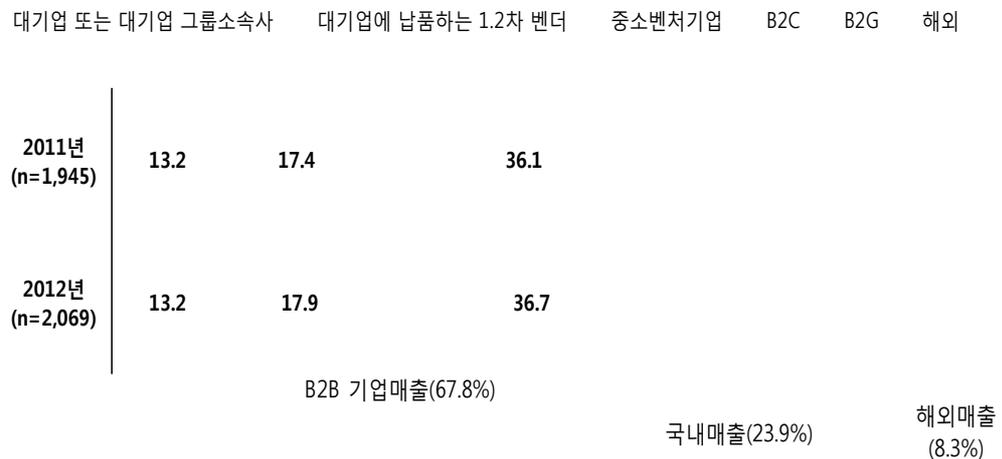
<그림 2-12>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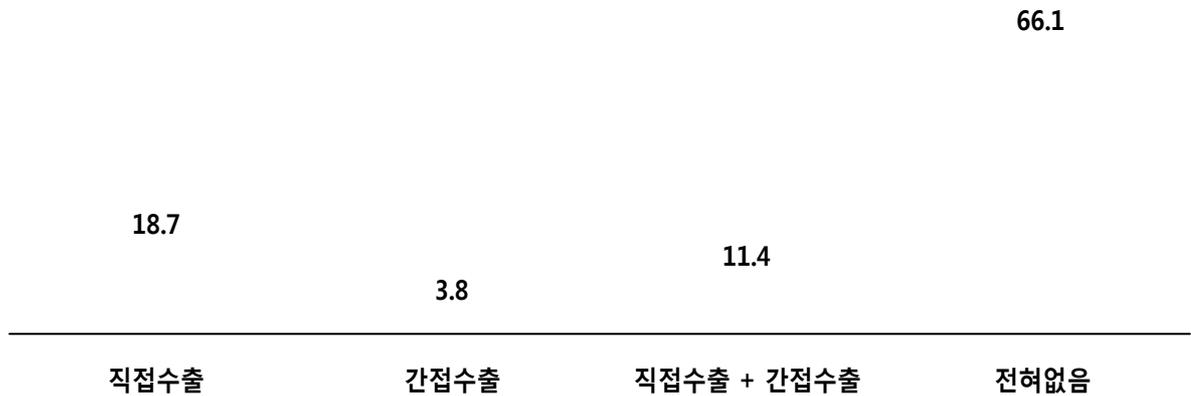
벤처기업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B2B 매출이 67.8%로 가장 높고, B2G가 16.0%, 해외매출이 8.3%, B2C 7.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B2B 매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 대상 매출이 36.7%, ‘대기업에 납품하는 1, 2차 벤더’ 매출이 17.9%,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소속사’ 매출 1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3> 매출구조<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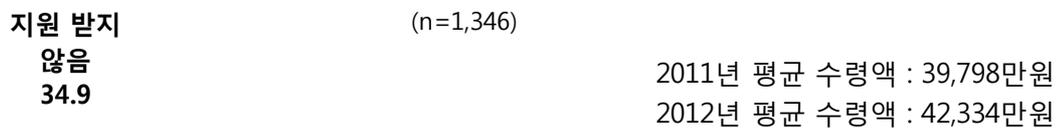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수출 참여 실적을 살펴보면 33.9%는 직·간접적으로 해외 수출에 참여하고 있고 66.1%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수출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14> 벤처기업의 수출 여부



다음으로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자금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과 2012년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은 65.1%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정책자금 수령금액은 평균 4억2,334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2-15> 정책자금 수령 경험 및 금액



벤처기업의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서 지원(보증서 발급대출)을 받은 비율이 46.8%로 가장 높고, 다음은 R&D자금(출연금)이 20.2%, 융자(정책자금) 18.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령금액은 융자(정책자금)가 평균 5.8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증서 지원이 3.2억원, R&D자금이 약 3억원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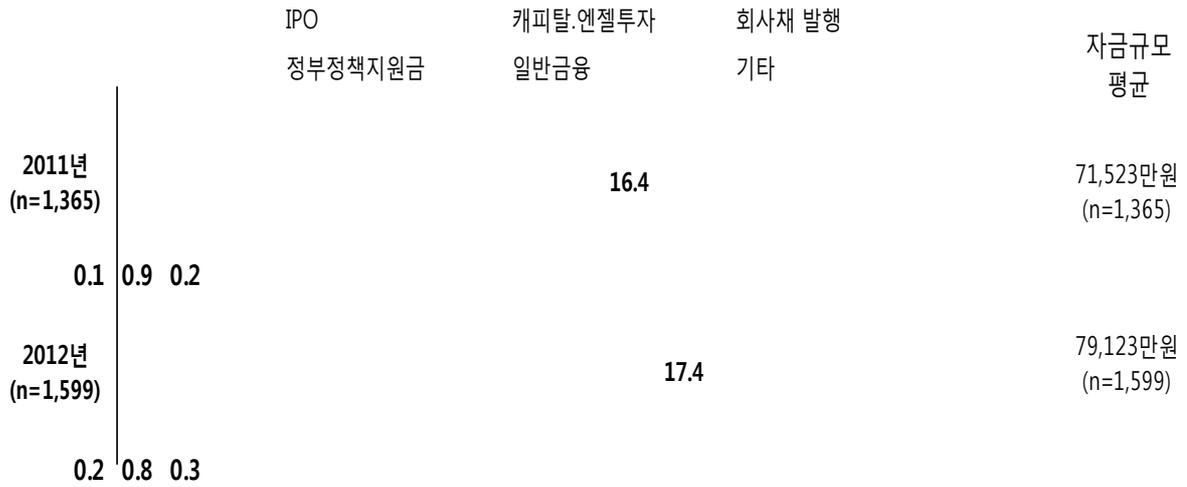
<표 2-7> 정부 정책지원자금 혜택 현황

<n=1,346, 단위:%>

구 분	2011년(n=1,243)			2012년(n=1,346)		
	경험여부		수령금액 (만원)	경험여부		수령금액 (만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R&D자금 (출연금)	16.6	83.4	29,029	20.2	79.8	29,578
융자 (정책자금)	14.9	85.1	56,421	18.3	81.7	58,321
보증서지원 (보증서발급대출)	38.4	61.6	30,243	46.8	53.2	32,460

다음에는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의 2012년 신규자금 조달규모는 평균 7.9억원이다. 신규자금 조달방법은 정부정책 지원금(53.3%)과 은행 등 일반금융(17.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캐피탈 및 엔젤투자(0.8%), 회사채 발행(0.3%), IPO(0.2%) 순이다.

<그림 2-16> 신규자금 조달규모 및 방법 <단위:%>



다음에는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은 2.9%로 대기업 1.1%, 중소기업 0.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어떤 기업보다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높아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표 2-8>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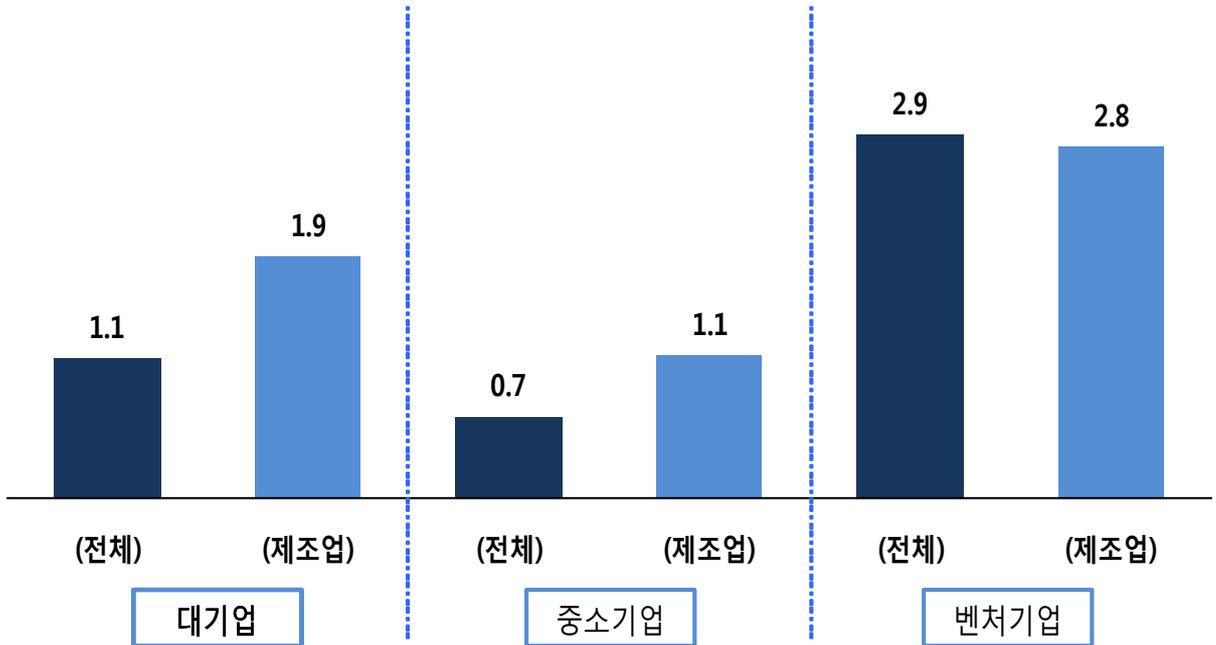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매출액연구개발비율 ⁸⁾	1.1	1.9	0.7	1.1	2.9	2.8

주) 대기업, 중소기업 자료 출처: 2012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주) 벤처기업 2012년 창업기업 제외

8) 매출액연구개발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100

<그림 2-17> 2012년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비교<단위:%>



다음에는 벤처기업들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을 살펴보면 ‘투자 경험 없음’ 이 96.0%로 높았으며,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 가 3.5%, ‘투자유치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상태’ 와 ‘과거 투자유치에 실패한 상태’ 가 각각 0.4%와 0.1%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유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18>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경험

<n=2,069, 단위:%>

	3.5	0.4	0.1	96.0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	투자유치 협상을 현재 진행중인 상태	과거 투자유치에 실패한 상태	투자 경험 없음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가 어렵다’는 응답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국내 판로개척이 어렵다’가 67.5%,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 58.7%,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가 어렵다’와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 56.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경우 경영애로사항으로 가장 큰 것은 자금조달이나 운영 등 자금관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9> 경영 애로사항

<n=2,069, 단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상위응답률 (Top2)	5점 평균 (점)
추가적인신기술개발에 어려움을 느낀다	2.9	8.2		53.6	3.5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기가 어렵다	3.0	9.6		56.1	3.5
새로운 국내 판로개척이 어렵다	2.0	5.9		67.5	3.8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	7.6	6.5		56.1	3.6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가 어렵다	4.9	6.6		58.7	3.6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가 어렵다	0.7	3.8		75.4	4.1
기술유출·디자인도용·상표도용 등을 막기가 어렵다	9.3	24.7	3.6	20.8	2.8
인터넷 활용 전자상거래 등 경영정보화가 어렵다	13.2	21.4	1.5	15.2	2.7
업계내의 과당경쟁 및 덤핑으로 어렵다	6.9	25.1	4.1	26.1	2.9
거래기업의 휴폐업으로 자금회수가 어렵다	19.2	29.3	2.0	12.3	2.5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어렵다	8.9	18.2	1.4	15.9	2.8
사업장을 설립또는 증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렵다	8.7	23.5	2.1	15.4	2.8
조직관리가 어렵다	7.4	18.9	2.5	26.6	3.0
낮은 수익률 및 마진률로 어려움을 느낀다	3.9	9.5		54.6	3.5
환율 변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20.2	17.7	2.0	17.3	2.6
특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28.1	21.8	0.6	7.9	2.3

4. 충남지역 벤처기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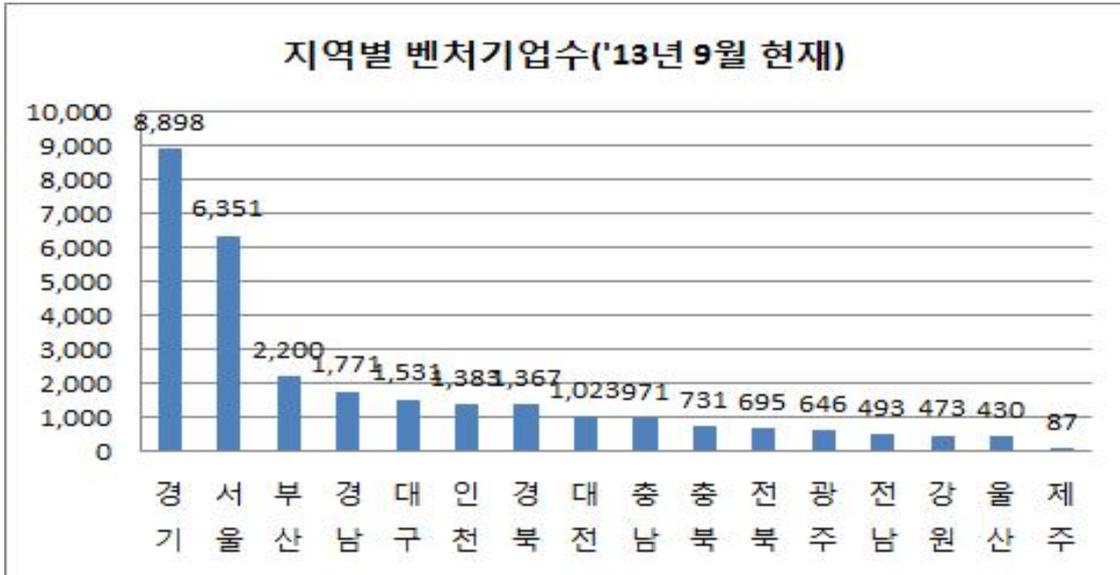
충남도의 벤처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충청남도의 일반 경제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충남도는 2012년 기준 GRDP가 89조원으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율은 3.4%로 제주(5.3%), 울산(3.6%) 다음으로 3위이다. 그리고 1인당 GRDP는 42백만원으로 울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지표 측면에서는 충남도는 전국 상위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218천명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여 중소기업체 수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연구원 수는 17,994명으로 전국 4위이고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출원수는 전국 5~6위로 중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볼 때 경제관련 각종 지표로 볼 때 충남지역경제는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표2-9> 충남도의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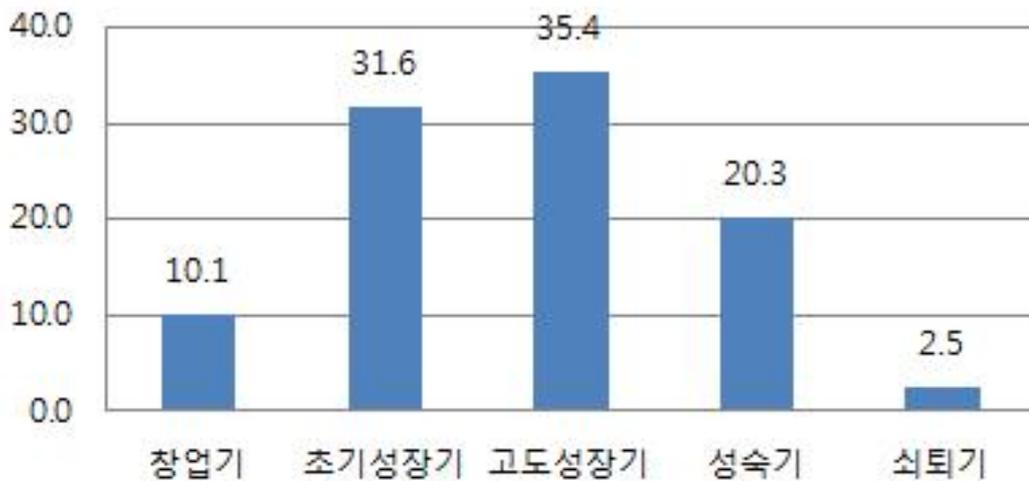
	인구 (천명)	지역총 생산	경제성장률	중소 제조업 종사자 수	업체 수 (소상공 인 제외)	연구원 수	벤처기업 수
절대 치	2,132	89조	3.4%	218,617	140,507 23,221	17,994	971
순위	8	3	2	4	8	4	9
비율	4.00%	7.0%		8.10%	4.00% (6.2%)	4.80%	3.34%

한편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수는 971개로 전국 대비 3.34%를 차지하며, 전국 9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수 측면에서 충남도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서 지역별 벤처기업수를 살펴보면, 2013년9월 기준으로 경기가 8,898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6,351개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52.5%를 차지하여 지역적 편중 매우 심한 실정이다.

<그림2-20> 지역별 벤처기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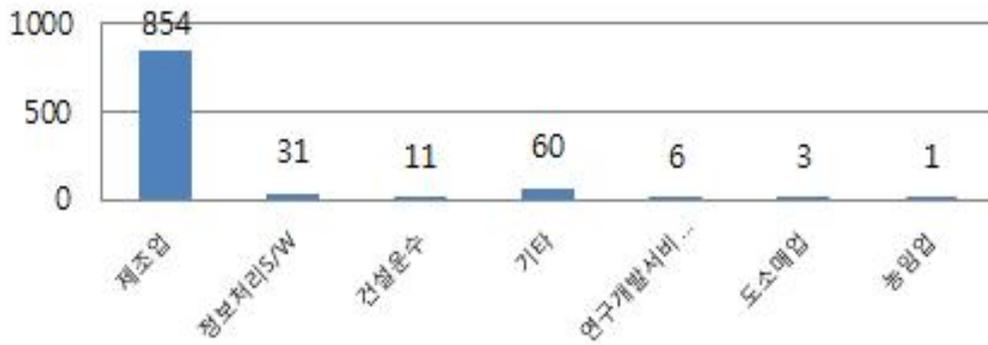


<그림2-21> 충남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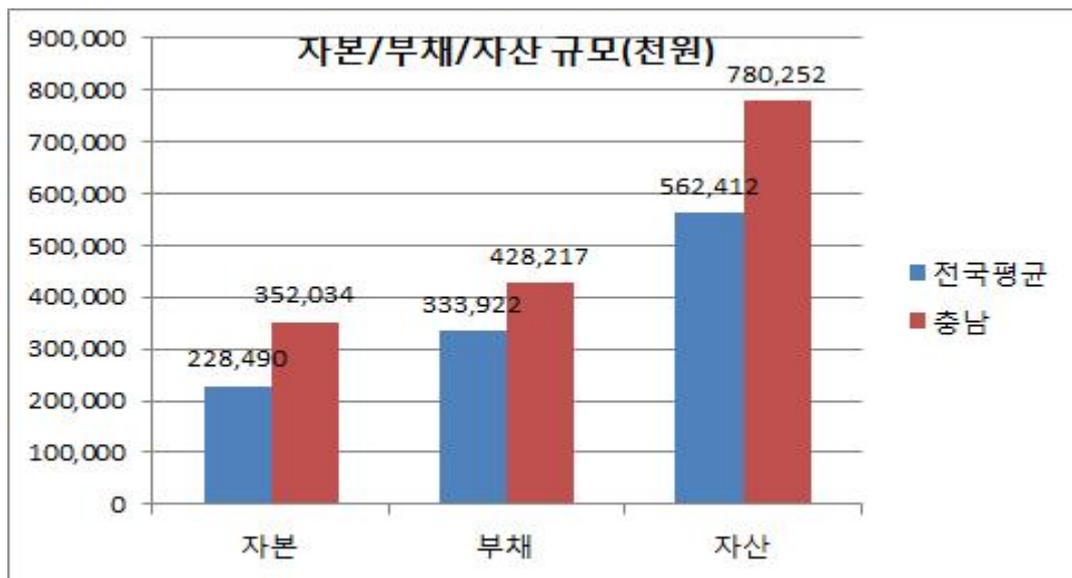
벤처기업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충남벤처기업은 창업기업이 41.7%에 달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고도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35.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2-21> 참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기타, 그리고 정보처리S/W등의 순이다.

<그림2-22> 충남지역 업종별 벤처기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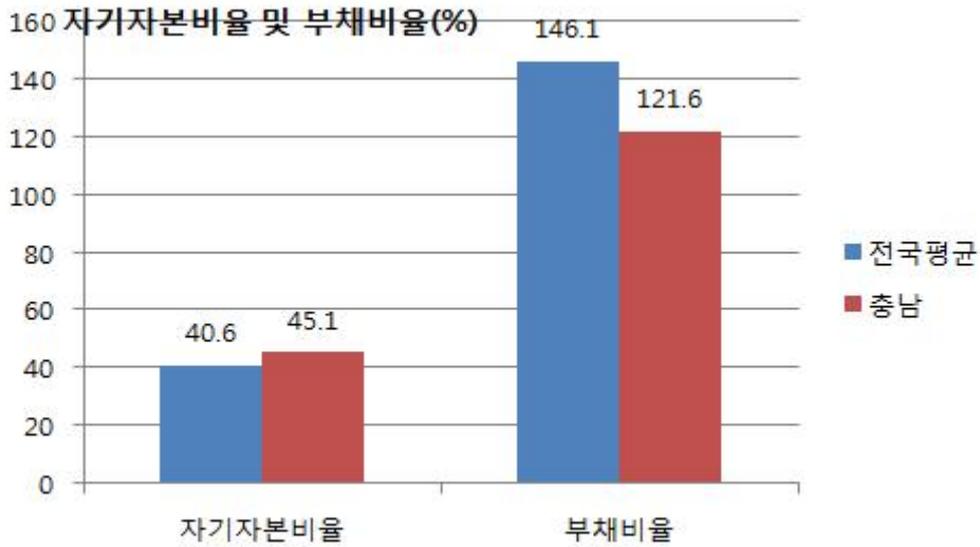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자본규모는 35.2억원이고 부채는 42.8억원 그리고 자산은 78억원으로 조사되고 있다(2012년말기준). 이러한 수치는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큰 수치이다. 따라서 재무상황의 측면에서 충남도의 벤처기업은 전국평균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2-23>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재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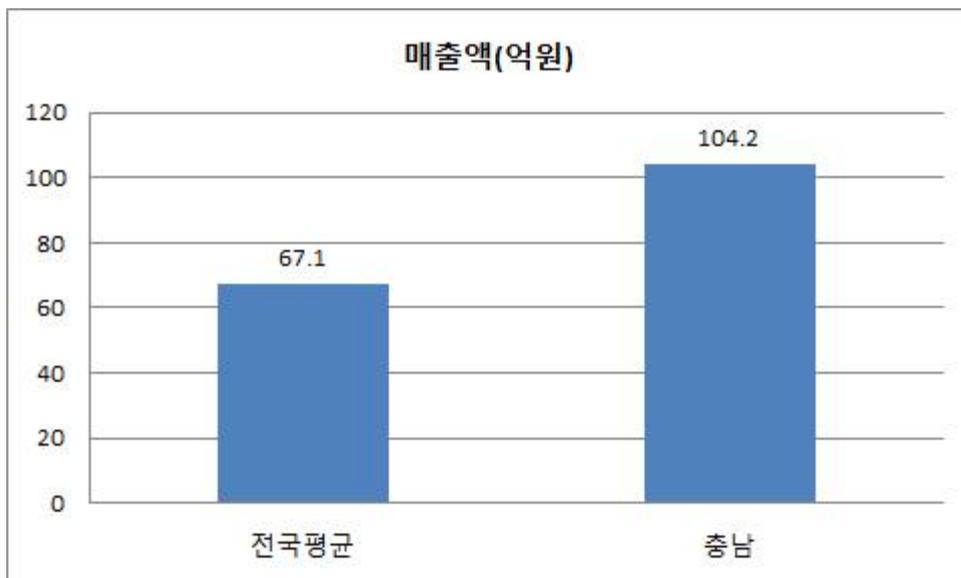


<그림2-24> 충남지역과 전국의 벤처기업의 재무구조비교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보면 자기자본비율은 45.1%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고 부채비율은 121.6%로 전국평균에 비해 낮아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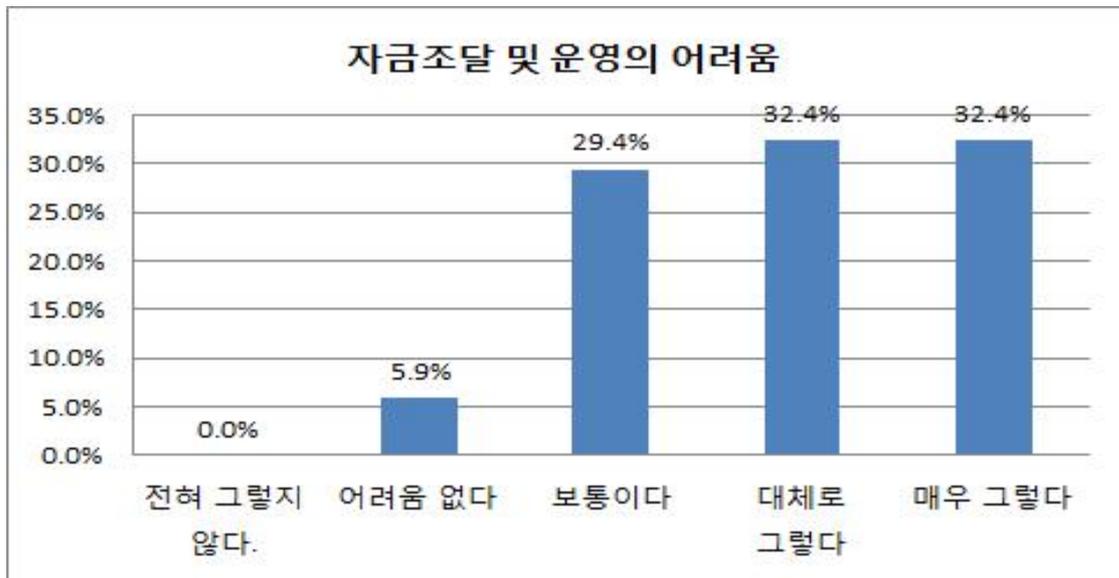
<그림2-25>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매출액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012년말 현재 104억원으로 전국 평균 67.1억 원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벤처기업들은 자금애로사항에 대해 64.8%가 ‘그렇다’ 이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자금애로사항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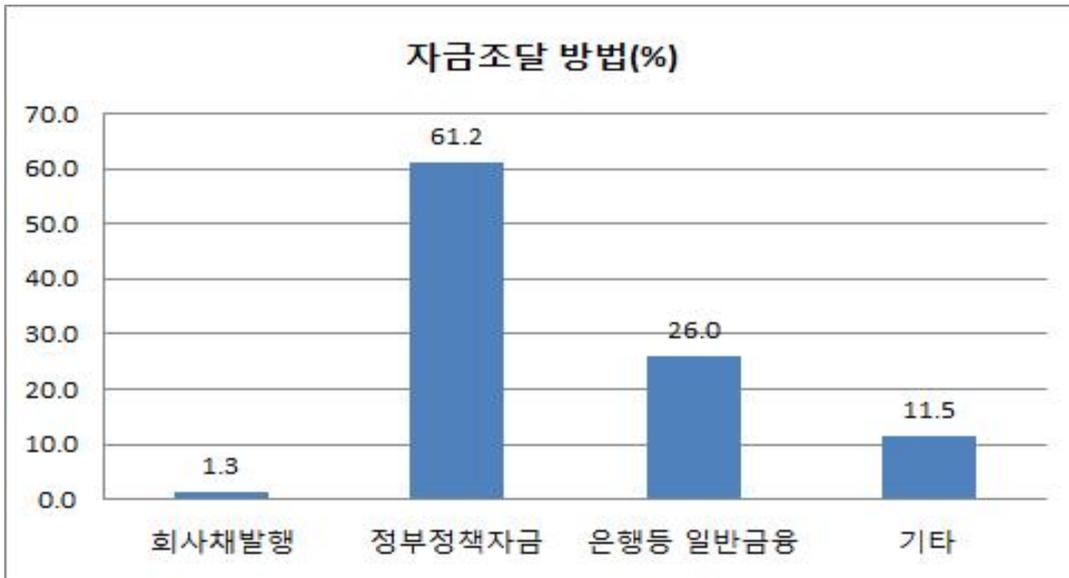
<그림2-26>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자금애로(%)



<그림2-27> 충남벤처기업 자금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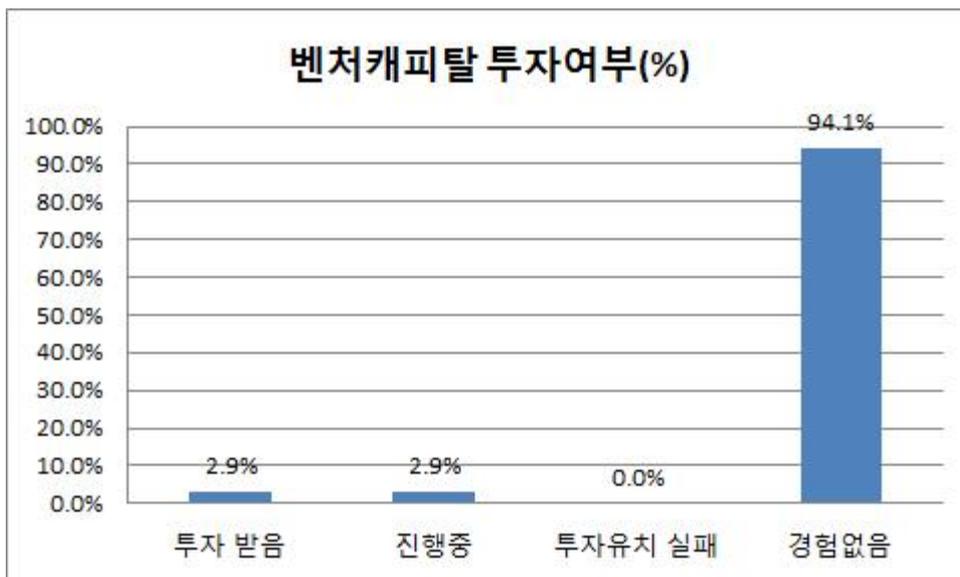


<그림2-28> 전국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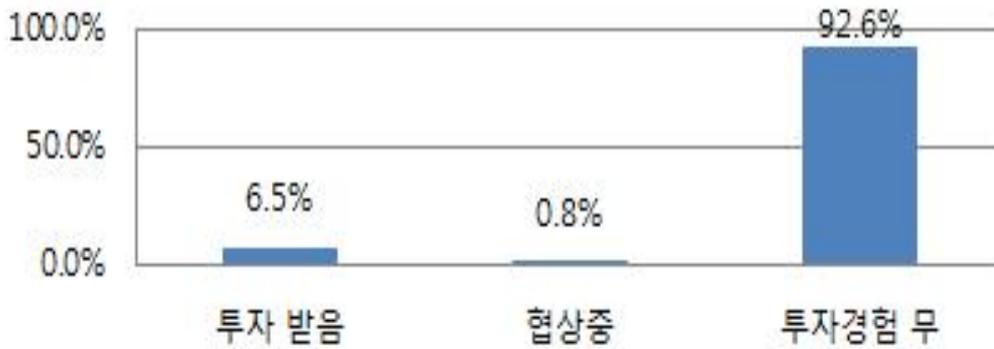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벤처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로 전국 평균 6.5%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림2-29> 충남 벤처기업의 투자 경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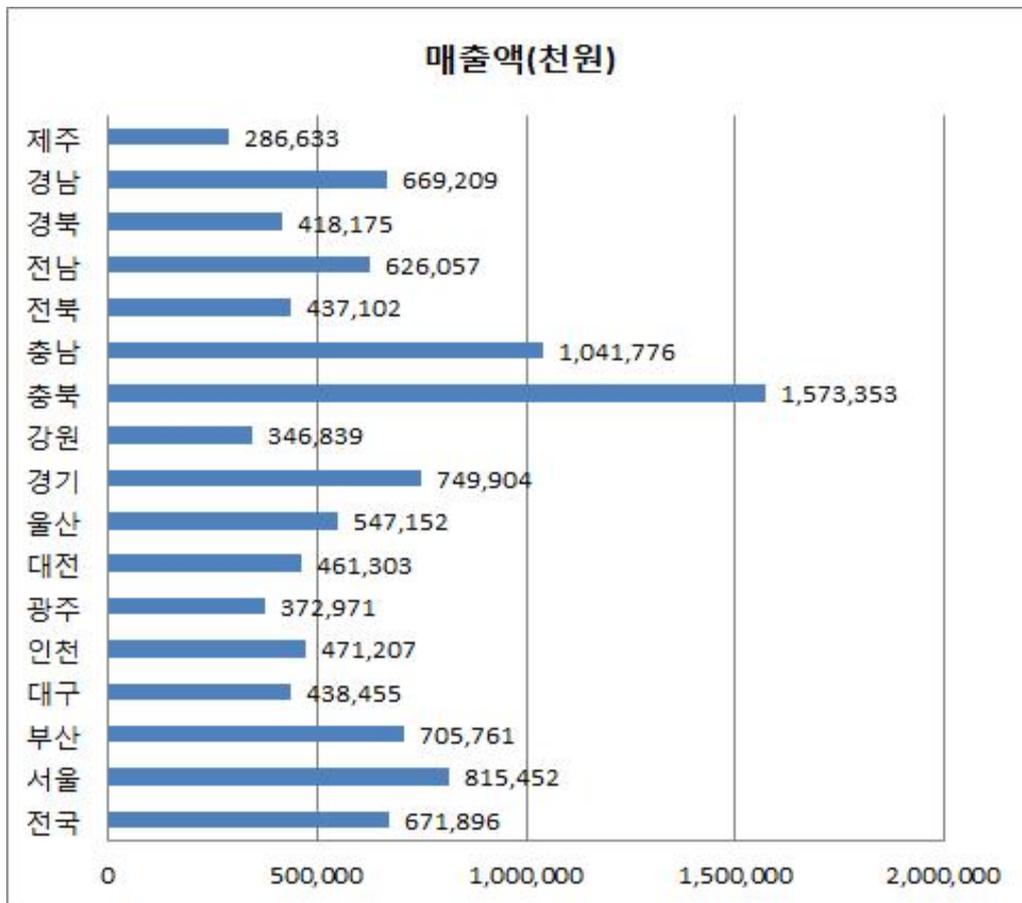


<그림2-30> 전국 벤처기업의 벤처투자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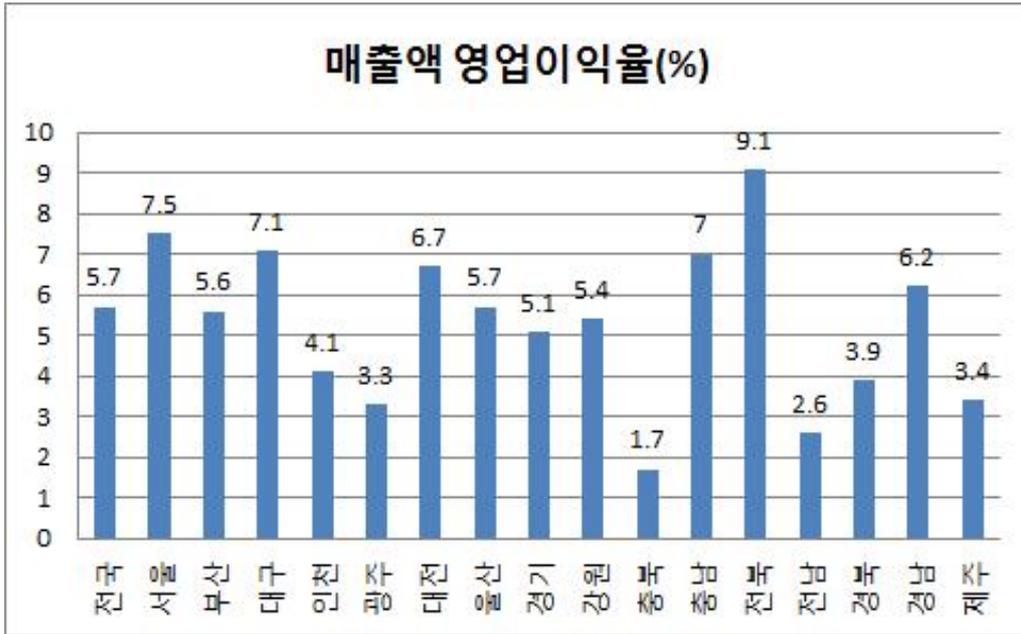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평균매출액은 10억원으로 전국 평균 6.1억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2-31> 지역별 벤처기업의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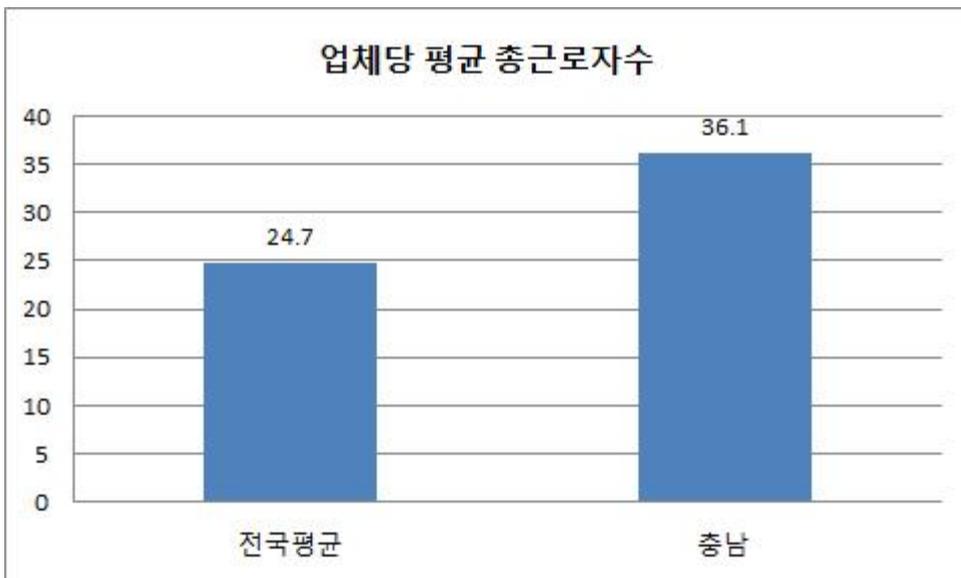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은 7.0%로 전국 평균 5.7%에 비해 높게 조사되고 있다.

<그림2-32> 지역별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2012년 7%로 전국 평균 5.7%보다는 높게 조사되고 있다.

<그림2-32> 충남지역과 전국의 벤처기업의 평균 근로자수



충남지역 벤처기업의 평균 근로자수는 36.1명으로 전국 평균 24.7명에 보다 높게 조사되고 있다. 그중 정규직 수는 34.7명이고 비정규직 수는 1.4명으로 대부분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3장 벤처투자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1. 벤처캐피탈의 개념과 특징⁹⁾

먼저 벤처투자금융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서승원(2008)은 벤처캐피탈을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이나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인 이후에 지분의 매각이나 IPO 등을 통해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볼 때 벤처캐피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벤처캐피탈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외부에서 조달한다. 자금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투자전문가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벤처캐피탈이다. 둘째,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주 투자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초기의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은 주로 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한다. 특히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회수기간이 길어 일반금융기관들을 통해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위험성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금융주체가 벤처캐피탈이다. 셋째, 벤처캐피탈은 자금과 동시에 경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벤처캐피탈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자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회계, 법무, 해외마케팅 등 각종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벤처캐피탈은 투자방식으로 고위험·고수익의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고수익·고위험의 벤처기업은 부채형식의 간접금융보다는 주식에 의한 투자금융이 바람직하다. 간접금융은 비록 고수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이자율만을 수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으면서 안정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에 금융을 해주게 된다. 따라서 부채형식의 간접금융은 고위험·고수익의 기

9) 서승원(2008) 참조

업에게 대출을 해줄 유인을 갖지 못한다. 반면 지분형태의 투자금융은 비록 위험은 높지만 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높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의 기업에 자금조달을 해줄 유인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은 추후에 자산가치가 높아진 이후 지분매각이나 IPO들을 통해 자본이득을 추구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포함한 회사의 경영전반을 일체로 양도하는 M&S를 통해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3-1>창투사의 등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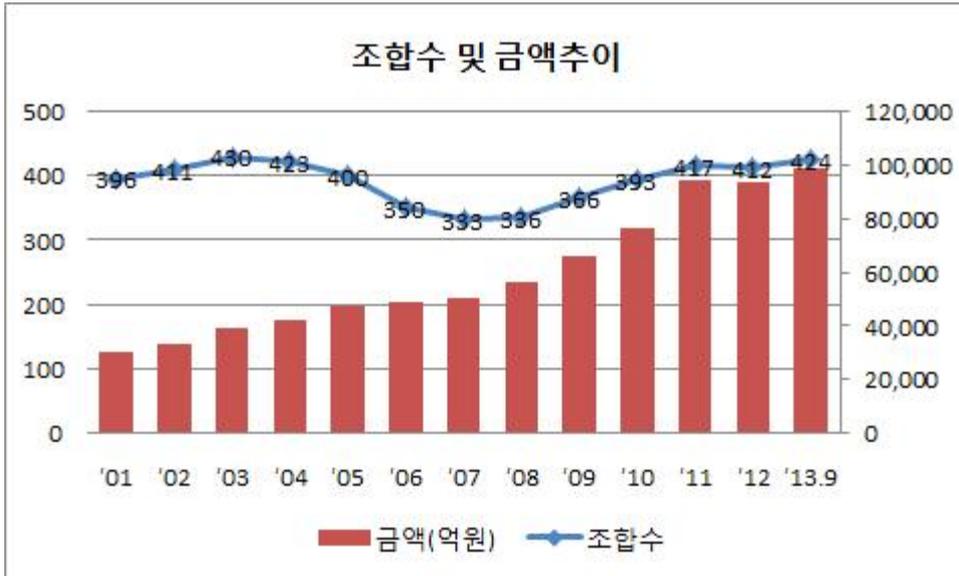


다음에는 창투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초에 벤처붐과 더불어 창투사수가 크게 증가하여 147개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 벤처붐의 붕괴와 더불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97개로 떨어졌다, 그 이후 약간 증가하여 100개사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등록 창투사는 102개사로 납입자본금이 1조 4,019억원으로 창투사당 평균 납입자본금은 137억 원에 이르고 있다.

투자조합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조합수는 2003년 430개를 최고로 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333개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9월 현재 424개에 이르고 있다. 2013년9월 현재

조합결성금액은 9조 8648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림3-2> 투자조합수 및 조합결성금액 추이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2. 우리나라 벤처투자금융

2000년대 초반까지 벤처붐과 더불어 벤처투자금융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시작된 IT 버블 붕괴와 더불어 벤처투자금융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벤처투자잔액은 금액이나 업체수 모두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의 확대에 따라 벤처투자잔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13년9월 현재 벤처투자잔액은 2,718개 업체에 4조2,344억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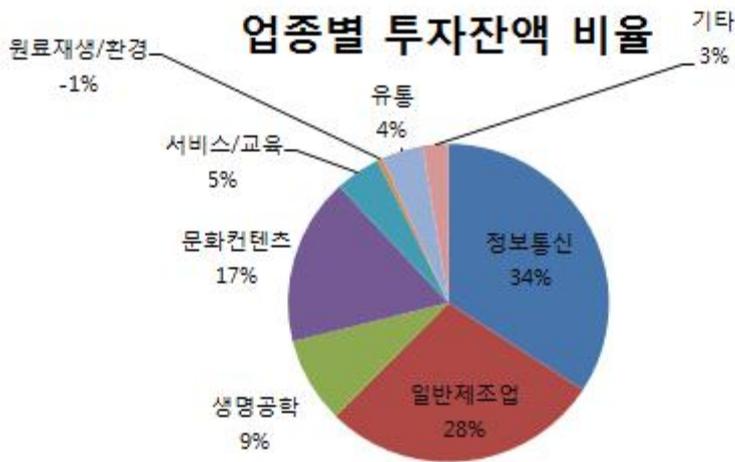
<그림3-3> 벤처투자잔액 추이

벤처투자잔액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그림3-4> 업종별 벤처투자금융잔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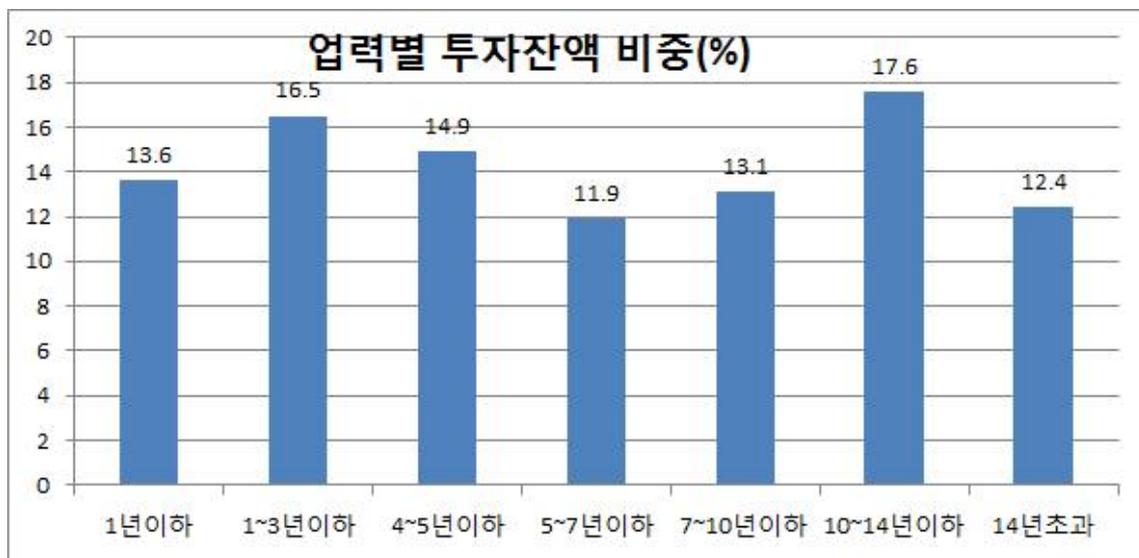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2013년9월 기준으로 업종별 투자잔액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이 1조4,461억원(1,185업체)으로 전체 투자의 34%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일반제조업이1조1,981억원(696업체)으로 28%, 문화콘텐츠가 7,204억원(754업체)으로 1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벤처투자업종은 정보통신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업력별 투자잔액을 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8238억원으로 43.1%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잔액이 1조2,771억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3년초과 7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1,335억원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금융을 제외하면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크게 낮아져 10% 이내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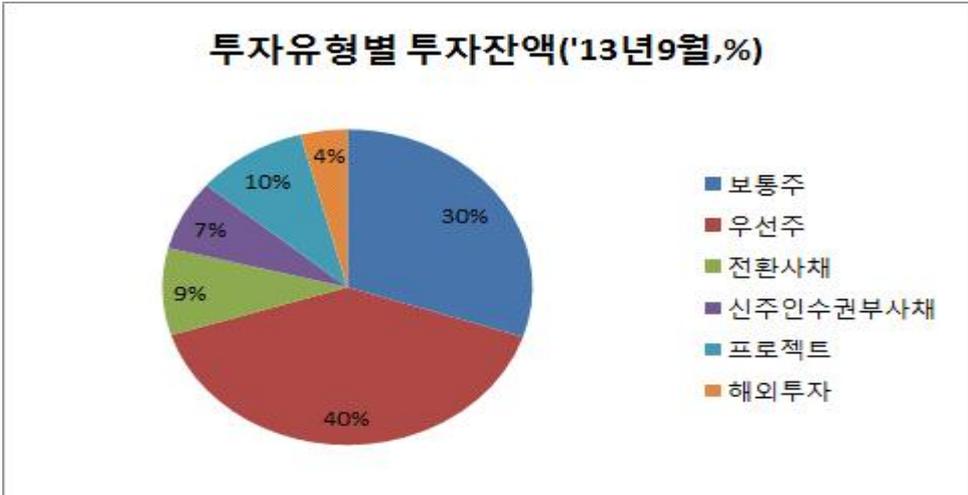
<그림3-5> 업력별 벤처투자금융잔액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투자유형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이 70.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16.1%로 그리고 프로젝트투자가 9.7%, 해외투자가 4.1%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 중에서 보통주가 30.1%, 우선주가 40.0%, 그리고 CB가 8.9% 그리고 BW가 7.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선주가 가장 많은 투자유형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통주, 그리고 전환사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3-6> 투자유형별 벤처투자금융잔액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중점지원펀드 결성 및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점지원펀드는 여성기업, 지방기업 그리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로 하는 펀드로 구분된다. 2013년9월 현재 중점지원펀드수는 97개로 그중 여성전문이 4개, 지방기업이 29개 그리고 창업초기가 64개가 있다. 현재 중점지원펀드를 위한 출자조합약정금은 1조1,167억원이고 투자금은 8,575억원에 이르고 있다(〈표 4-1〉 참조).

〈표3-1〉 중점지원펀드 결성 및 투자실적 (단위: 개,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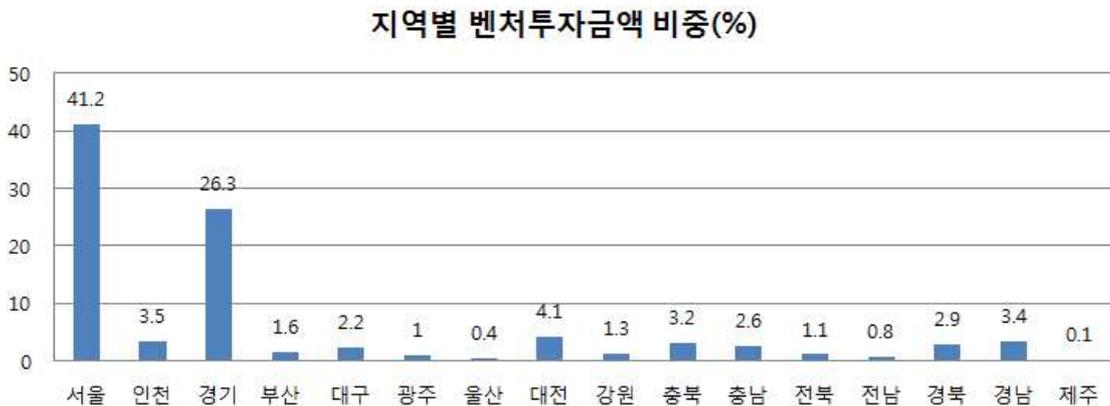
구분	출자자	조합수	출자		투자	
			기금약정금액	조합약정금액	업체수	투자누계
여성전문	모태	1	50	100	11	107
	중진공	3	73	200	50	293
	계	4	123	300	61	400
지방기업	모태	11	533	1,340	89	1,248
	중진공	9	289	806	128	901
	일반 ¹⁾	9	0	1,220	97	1,002
	계	29	822	3,366	314	3,151
창업초기	모태	52	4,383	6,896	540	4,148
	중진공	7	207	525	76	543
	일반 ²⁾	5	0	588	19	333
	계	64	4,590	8,009	635	5,024

* 중점지원펀드 : 모태펀드 및 중진공이 출자한 전문펀드

1), 2)모태펀드 및 중진공이 출자하지 않은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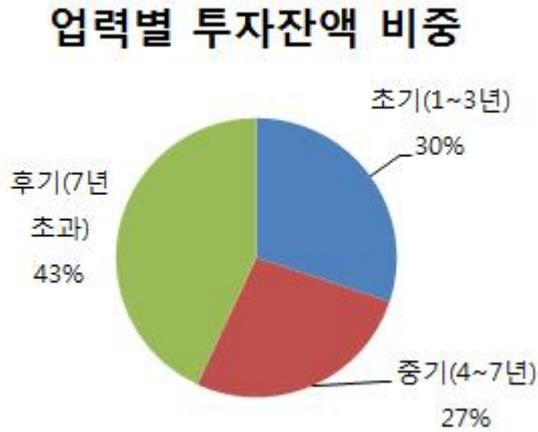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그림3-7> 지역별 벤처투자잔액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그림3-8> 업력별 벤처투자잔액 비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다음으로 지역별 투자잔액을 살펴보면 ‘13.9기준 서울(41.2%), 경기(26.3%) 등 수도권이 71.0% 차지하여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남은 2.4%로 대전 4.1%, 충북 3.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벤처투자액을 살펴보면 2000년 중반까지는 6000억원대로 거의 정체되는 수준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1년에는 613개업체에 1조2,608억원에 이르렀고 2013년(1~9월) 579업체에 9,842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벤처투자액이나 투자잔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3-9> 벤처투자액 추이

전국 벤처 투자액



<표3-2> 회수유형별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2.9	'13.9	
IPO	금액	1,462	1,017	689	949	869	1,080	1,220	715	615	
	비중	23.2	17.2	17.1	15.7	14.2	18.1	17.8	14.6	12.7	
M&A	금액	298	154	237	430	298	86	72	72	22	
	비중	4.7	2.6	5.9	7.1	4.9	1.5	1.0	1.5	0.4	
프로젝트	금액	1,040	1,049	938	994	1,457	1,102	1,533	973	1,281	
	비중	16.5	17.7	23.2	16.4	23.7	18.5	22.4	19.9	26.4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금액	2,691	2,857	1,635	2,748	2,395	2,608	2,655	2,192	1,627
		비중	42.8	48.4	40.5	45.3	39.1	43.8	38.9	44.8	33.5
	채권	금액	807	833	537	845	1,049	1,044	1,165	863	739
		비중	12.8	14.1	13.3	13.9	17.1	17.5	17.1	17.6	15.2
기타	금액	0	0	0	98	65	37	188	80	574	
	비중	0.0	0.0	0.0	1.6	1.0	0.6	2.8	1.6	11.8	
전체	금액	6,298	5,910	4,036	6,064	6,133	5,957	6,833	4,895	4,85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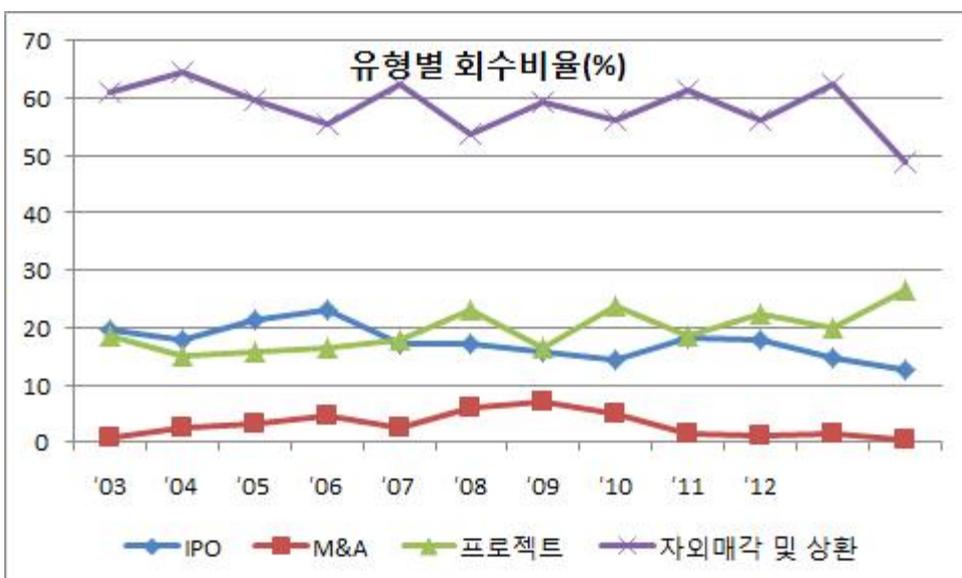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수금액은 2008년 4,036억원에 이르던 것이 2009년에는 6,064억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다시 6,83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3-10> 회수금액 추이



유형별로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수금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외매각 및 상환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50~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연도별로 변동이 있지만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M&A의 비중이 크게 낮아 2011년 이후에는 1%대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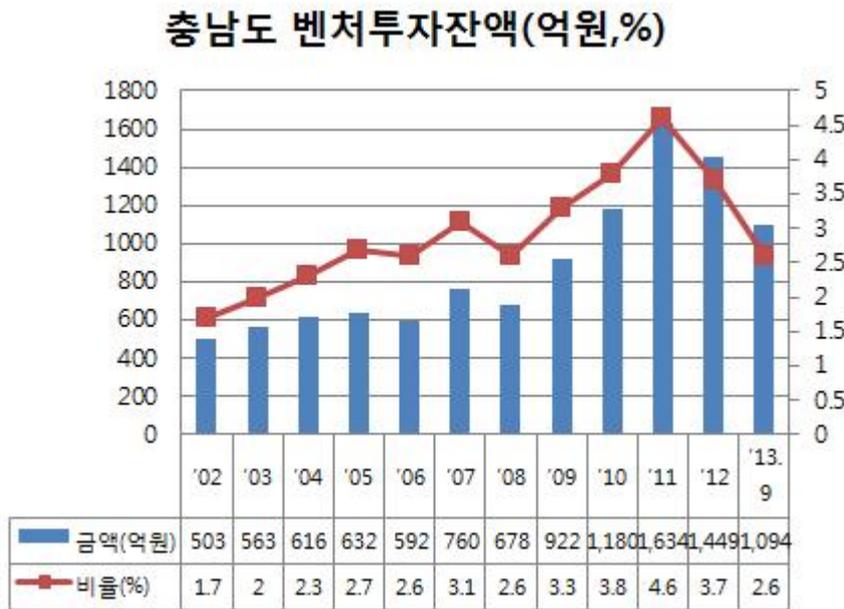
<그림3-11> 유형별 회수비율 추이



3. 충청남도의 벤처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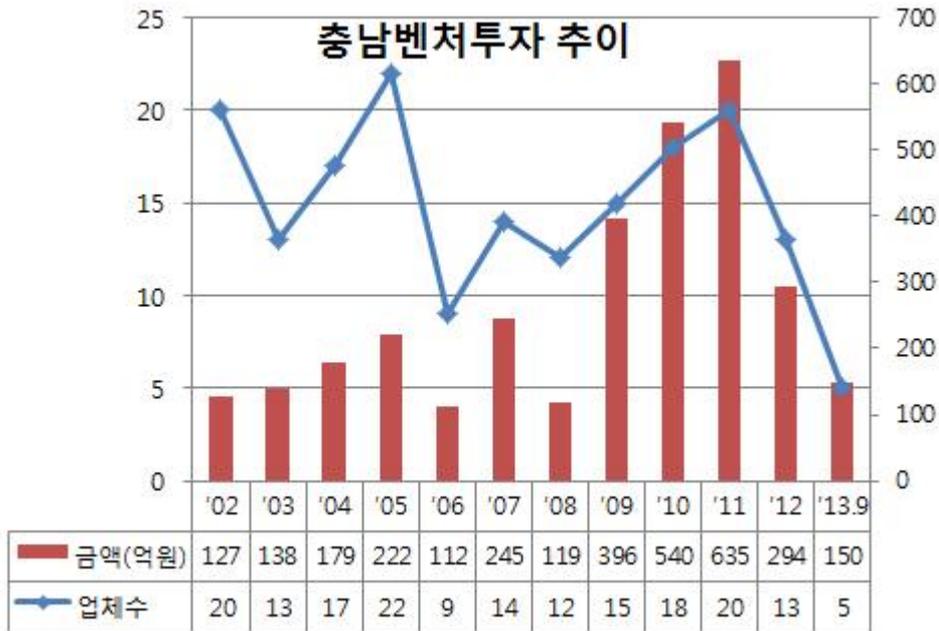
충청남도의 투자잔액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63개업체에 대해 503억원이던 것이 2011년 90개업체에 1,634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2년에는 96업체 1,449억원에 머물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94개업체에 1,09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충청남지역의 벤처투자잔액이 전국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1.7%에 머물던 것이 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4.6%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2013년 9월 현재 2.6%에 머물고 있다.

<그림 3-12> 충청남도의 벤처투자잔액 추이



충청남도에 대한 신규벤처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20개업체에 127억원이던 것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35억원에 이르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2년에는 294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3년 9월 현재 5개업체에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전국대비 충청남지역 벤처투자비중을 보면 2011년 5.0%를 2012년에는 2.4%, 그리고 2013년9월 현재 1.5%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3-13> 충남도의 벤처투자 추이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

4. 벤처투자금융의 문제점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벤처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벤처기업은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 단계(start-up), 성장초기 단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변모된다. 이러한 성장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환경을 벤처생태계라 하는데, 벤처생태계로의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를 벤처자금생태계라 할 수 있다. 벤처자금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주로 용자중심으로 이루어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은 실패에 따른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여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99%를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GDP대비 벤처투자비율('09년 기준)을 보면 미국이 0.17%, 이스라엘이 0.4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초기기업들이 투자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을 뿐 아니라 창업에 다른 위험부담이 과도하여 창업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라는 순환구조가 막혀 벤처자금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M&A 형태의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이후 회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라는 순환구조가 막혀 벤처자금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벤처투자액은 잔액기준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9월 현재 2,718개 업체에 4조2,344억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셋째, 최근 벤처 투자 규모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주로 공공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벤처자금은 민간자금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모태펀드와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측 출자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회수기간 장기화, 투자 리스크로 민간투자자들이 벤처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투자시장의 특성으로 민간자금 출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공공자금(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로 벤처투자금융이 서울과 경기도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2013년9월 기준으로 서울이 전체의 41.2%, 경기도가 26.3%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 경기도가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다. 벤처기업수가 서울 경기도가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벤처투자금융은 서울과 경기도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충남지역의 벤처투자는 매우 저조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충남지역에 대한 벤처투자는 잔액기준으로 94개업체에 대한 1,094억원으로 전국대비

2.6%를 차지하여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충남벤처기업들은 자금애로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남도차원에서 벤처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재 충남지역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이 전무하고 지역엔젤매칭투자펀드도 설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자금생태계 확립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제4장 국내외 창업벤처기업 육성정책

1. 해외 창업벤처정책

1) 미국

미국은 오랜 창업문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민간 주도형 창업문화가 정착된 창업 선진국이다. 글로벌 창업활동조사(GEM)에 따르면 2010년 미국의 창업활동지수(TEA)는 7.6%로 선진국 평균인 5.6%보다 높은 수준으로 창업환경이 잘 조성된 국가로 꼽힌다. 특히 '90년대 들어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벤처창업 형성과 순환을 통한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소기업에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효과가 다각적으로 검증되면서 2011년 창업국가를 지향하는 대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마련하여 창업열기를 더하고 있다.

미국의 벤처생태계 조성의 중심에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투자가 자리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창업 생태계는 두텁고 효율적인 벤처캐피탈 시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금융은 정보비대칭으로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인데, 미국에서는 엔젤이나 벤처캐피탈에 의해 창업(seed)·초기단계(early stage)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M&A를 통한 회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어 벤처투자금융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었다.

(1)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¹⁰⁾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은 5가지로 요약되는데 다음과

10) 중소기업창업벤처국(2011)의 『선진국 창업·벤처정책 사례』 참고

같다. ① 고성장 창업기업의 자금 접근성 확대 ② 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③ R&D 사업화를 강화해 혁신적인 창업기업과 신산업 창출 ④ 고성장 창업기업에 불필요한 장애 요인을 제거 ⑤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 강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 역할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접근성을 확대하고 멘토와 기업가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기업가에 대한 자금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SBA)의 임팩트투자 및 창업 초기단계투자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은 임팩트 투자기금과 초기혁신투자기금과 같은 민간 투자기금이 고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규모에 맞춰 매칭펀드 형식으로 향후 5년 동안 양 기금에 10억 달러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연장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주식매각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저소득 지역에서의 민간 투자 세액공제 규모를 35억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확대하였다. 즉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투자관련 세금을 인하하고 나아가 정부의 투자기금을 확대하였다.

다음에는 멘토와 기업가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청과 에너지부의 청정기술 창업기업을 위해 멘토십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에너지부 및 ARPA-E와 공동으로 4개 민간 기업 액셀러레이터(private business accelerator)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100개 청정에너지 창업기업에 멘토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퇴역군인 창업 지원을 위한 신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혁신의 가속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상무부의 경제개발

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기술 사업화, 신규 벤처 형성,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위해 i6 그린(i6 Green)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인 클린 경제 구축을 위해 기술 기반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개념검증센터(Proof of Concept Centers)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개념검증센터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구에 종자돈(seed money)을 제공하고 더불어 기술사업화 자문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구이다.

② 민간 역할

민간은 장기적인 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차세대기업가를 지원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장기적인 기업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최고의 기업가와 업계 선도 기업의 새로운 연합을 형성한다. 최고의 기업가, 벤처 자본가, 엔젤 투자자, 기업, 대학, 재단 등이 연합해 기업가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tartup America Partnership: SUAP)을 출범하였다. SUAP는 Case 재단, Kauffman 재단, 마이크로소프트, 델,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의 민간 스폰서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다.

첫째, 교육분야에서는 고등학교, 지역 전문대학, 종합대학 등에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확대한다. 둘째, 사업화영역에서는 지역 생태계 개발, 교수 참여 확대, 기술 라이선싱부여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통해 많은 대학에서의 원천 연구가 시장에서 상용화되도록 지원한다. 셋째로는 창업지원 영역에서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험이 풍부한 멘토를 모아 성공적인 기업가정신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더 많은 도시 및 대학에 전파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차세대 기업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기업가 정신 지도 네트워크(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 NFTE)를 출범한다. NFTE는 저소득 지역의 청년기업가, 혁신 지도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청년사업가와 이들의 지도자를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Seedlings 재단과 Kauffman 재단의 지원을 받은 NFTE의 “StartUp Summer” 파일럿 프로그램은 학생 창업가로 하여금 목표를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뒤,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학(원)생, 졸업생이 창업을 진로로 탐색할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블랙스톤 런치패드(Blackstone LunchPad)를 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멘토와 기업가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테크스타 네트워크(TechStars Network)는 뉴욕시, 보스턴, 시애틀, 보울더 등에서 멘토십 기반 창업 액셀러레이터를 운영하여 향후 3년에 걸쳐 성공을 거둔 기업가와 투자자를 네트워킹해 6천명의 청년 기업가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혁신을 가속화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쉬판드 재단(Deshpande Foundation)에서는 뉴올리언스에 엔터프라이저십 센터(New Entrepreneurship Center) 설립한다. 또한 지역 기반 혁신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인 점프스타트 아메리카(JumpStart America) 출범하였다. 대학발명가 혁신가연합(National Collegiate Inventors & Innovators Alliance)에서는 14개주 23개 대학의 기업가에게 1백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창업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5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텔은 2011년 Intel Capital을 통해 2억 달러의 신규투자를 단행했으며, Senior Intel Leadership은 인텔의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SUAP의 회원인 창업기업과 공유한다. IBM은 2011년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이 투자금은 미국 전역에 있는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 제공, 교육 확대, 학계 및 벤처캐피탈과 연합을 통한 기술 및 멘토십 프

로그랩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 기술 및 사업 기회 제공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휴렛패커드는 2011년에 HP Learning Initiative for Entrepreneurs(HP LIFE)를 통해 4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HP LIFE를 확대해 미국내 1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HP Startup Central을 통해서도 혁신 및 사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미국내에서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해 Startup Days를 열었다. Startup Days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페이스북 특별 게스트 연설자, 투자 커뮤니티, 성공한 엔지니어 및 기업가 등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고, 다른 창업가, 학계 및 벤처캐피탈리스트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교육, 멘토링 및 자금 지원 이외에도 참여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무료로 또는 일정 기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Flights Camera Action 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 무료 비행과 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 페덱스는 자사 서비스를 최대 40% 할인하여 제공하며, 휴렛패커드도 자사의 PC, 프린터 등의 단말기를 창업기업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TriNet이라고 하는 인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연봉에 관한 연구자료 및 한 달간의 인사관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기반의 채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Resumator는 6개월간 Resumator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창업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표4-1> 미국 start-up 이니셔티브 조치

구분	주요 시책
공공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금 접근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초기단계 투자 펀드 조성(중기청) - 민간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칙 간소화(재무부) 2. 멘토와 창업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퇴역자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보훈부) - 민간 액셀러레이터 지원(중기청 및 에너지부 등) 3. 정부 역할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정신 고취 위한 고위급 관료들의 전국 순회 추진 - 신시장 확대를 위한 보건 의료기술 관련 회의체 확대(건강복지부, 백악관 등) 4. 혁신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장려 위한 i6 그린 추진(경제개발청) - 특허 심사 단축(특허청)
민간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스폰서로부터 재원 조달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화 촉진, 창업 지원을 위한 비영리재단인 SUAP 조직 2. 차세대 창업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및 소외 청소년 대상 청년 창업가 양성 교육(기업가정신 교육네트워크) 3. 멘토와 창업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가 위한 멘토링 지원(TechStars) -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교육, PR, 네트워킹 및 사무실 공간 등 포함한 무료 서비스 등 제공(MassChallenge) 4. 대기업과 창업가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교육확대, 사업기회 제공(인텔, HP, 페이스북 등) - 자사 제품 무료 또는 할인 판매(아메리칸 에어라인, FedEx, HP 등) 5. 혁신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혁신과 기업가정신 촉진(JumpStart Inc.) - 대학생 창업 보조금 프로그램 확대(전미대학발명가혁신연합회)

(2)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프로그램

SBIC는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의 인가를 받은 민간 벤처투자 펀드이다. 기본적으로 SBIC는 민간 전문가에 의해 관리 운용되고 있는 민간 벤처투자펀드이다. 이들 민간 벤처투자 회사들은 SBA로부터 SBIC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민간 투자 펀드와 구별된다. SBIC 라이선스는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펀드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데, 정부는 SBIC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나 중소기업 회사채 인수를 지원한다.

SBA는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대신 SBIC에 투자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SBIC 프로그램은 '펀드의 펀드'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자금과 민간자본이 결합되기 때문에 기술금융 부분의 정부-민간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SBA 자체는 특정산업을 타겟으로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공채발행을 통해 SBIC를 지원하기 때문에 SBIC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없다.

SBIC는 소규모 혁신기업들의 초기 창업 및 성장 단계에서의 자본 수요와 전통 자본시장에서의 공급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위해 설립된 공공 금융 프로그램이다. SBA는 SBIC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산업에 전문적인 투자 경험이 있는 유자격 투자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이들 회사에 정부 지불보증 형태의 투자를 하여 간접적으로 소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공자본을 조성하기 위해서 SBA는 SBIC 사채(debenture) 발행을 보증한다. 이러한 SBA 보증사채는 정기적으로 공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SBIC는 공공자금과 자체의 민간자본을 합하여 자신들의 책임하에 SBA가 규정하는 소규모 혁신기업에 장기 투자하여야 한다.

SBIC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SBICs로 지정이 되면 자체 민간자본의 최대 3배까지(통상 2배) 사채를 저리로 발행하여 발행하여 투자자본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또한 SBICs에 투자하는 재정기관들은 지역

재개발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edits)에 근거하여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경제개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SBIC의 투자를 받은 혁신 중소기업들은 자본 및 장기융자 뿐 아니라 SBIC 경영전문가의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미국의 엔젤지원기관

엔젤(angel)이란 발아단계나 창업단계(seed/early start-up)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그 회사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 후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자를 의미한다. 미국의 엔젤 지원기관은 ACE-Net, Kauffman Foundation(KF), 엔젤 캐피탈 교육 재단(The Angel Capital Education Foundation; ACEF), 벤처 연구 센터 (Center for Venture Research; CVR), 엔젤캐피탈협회(Angel Capital Association; ACA) 그리고 엔젤그룹 등을 들 수 있다.

① ACE-Net (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 Active capital)

ACE-Net는 현재 Active Capital로 불리우고 소규모 지분투자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이다. 1996년 SBA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활동 개발되어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운영되고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자본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적인 역할 수행하고 있다. 25만 달러에서 5백만달러까지의 소규모 지분투자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이다.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들이 지닌 비공식성과 비효율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청의 협조하에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활동 중인 엔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엔젤들도 쉽게 투자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엔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전역의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투자가 및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투자가나 기업 경영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자료 제공한다. 또한 유망 예비창업자의 발굴부터 교육, 투자 등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Active capita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업가들이나 투자자들은 일정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 엔젤투자시장의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온 뉴햄프셔 대학의 the Center for Venture Research (CVR)은 ACE-Net 개발계획에서 인터넷 서버의 Host와 경제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Kauffman Foundation(KF)

1960년대 중반에 Kauffman에 의해 설립되어 미국에서 가장 큰 재단으로 20억달러의 자산을 지니고 있다. KF의 비전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a society of economically independent individuals who are engaged citizen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ir communities)육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전 달성을 위해 KF는 기업가정신을 발전시키고 청소년의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면서, 기업가정신, 혁신의 진보, 교육 그리고 연구 및 정책의 네 가지의 계획 분야를 통해 KF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KF는 투자자, 기업가 지원 단체, 대학 교직원 및 학생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제공될 엔젤투자자에 대한 교육, 정보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 ACEF(Angel Capital Education Foundation)를 설립하였다.

③ 엔젤 캐피탈 교육 재단(The Angel Capital Education Foundation; ACEF)

엔젤 캐피탈 교육 재단(ACEF)은 2005년에 Kauffman 재단에 의해서 엔젤 투

자 분야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2007년에는 Kauffman재단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하였다. 엔젤 캐피탈 교육 재단은 Kauffman재단에 의해 설립되어 투자자, 기업가 지원 기관, 대학 교수진, 학생들과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엔젤 투자에 관한 교육과 정보제공 및 연구에 힘쓰는 자선 단체이다. 재단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엔젤투자관련 전문성 개발, best practice, 네트워크 기회 및 엔젤그룹을 제공한다. ACEF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미나와 워크샵, 연구와 정보 제공 그리고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④ 벤처 연구 센터 (Center for Venture Research; CVR)

벤처 연구 센터(CVR)은 뉴 햄프셔어 대학의 Whittmore 경영 경제 대학원 소속의 종합 학문적 연구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 1984년에 개원하여 고성장 벤처 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에 관한 많은 연구 진행
- CVR은 엔젤과 벤처 자본 산업의 필요를 역설하는 연구와, 전문가 심포지엄을 후원.
- CVR은 엔젤 투자 통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엔젤 투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장 분석 보고서를 출간.

CVR은 엔젤투자에 관한 한 선두적인 데이터 제공자이며 엔젤투자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⑤ 엔젤캐피탈협회(Angel Capital Association; ACA)

엔젤 캐피탈 협회(Angel Capital Association; ACA)는 미국 주요 엔젤 투자 그룹의 거래 연합체로서 업계의 통계정보, 모범사례, 전문성 개발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룹 회원간 네트워킹 및 협업을 촉진하여 소속 엔젤그룹들의 성장, 재무적 안정성 및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회는 엔젤투자 공동체를 대표하여 공공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정책이 엔젤 투자를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선진화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엔젤캐피탈협회는 2010년 현재 150개의 회원엔젤그룹을 지니고 있고 6500명의 적격엔젤투자자 보유. 그리고 20개의 회원기관 보유하고 있다.

협회의 임무는 소속 엔젤그룹들의 성장, 재무적 안정성 및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북 아메리카의 선도적인 엔젤 투자 그룹의 연합이다. ACA의 임무는 회원 엔젤 그룹에 속한 투자자들에게 업계의 모범사례, 전문성 개발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룹 회원간 네트워킹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엔젤투자 공동체를 대표하여 공공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정책이 엔젤 투자를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선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⑥ 엔젤 그룹(Angel Group)

엔젤그룹은 투자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적극엔젤투자자(active angel investors)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체이다. 엔젤그룹의 핵심적인 특징은 엔젤 회원(member angel)에 의한 통제와 투자과정에서의 회원엔젤에 의한 협력이다.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모임으로 엔젤 그룹은 현재 엔젤 그룹은 거의 모든 미국의 주와 캐나다 지역에 존재하며, 적격 투자자(credited investor)들에게 투자 및 성공적인 회사설립과 성장에 도움을 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적격투자자의 조건은 증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투자시점에 백만불 이상의 순자산을 갖고 있거나 최근 2년간 연 20만불 이상의 소득이나 배우자와의 소득합계가 연 30만불 이상인 개인을 의미한다.

엔젤 그룹 소속으로써 얻을 수 있는 투자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투자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과 노력 부담 완화
- 표준화된 과정과 계약 문서
- 질적 및 양적으로 개선된 거래의 흐름
- 엔젤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높은 가능성과 투자 손실 위

협 부담의 감소

-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신흥 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성공한 기업가와 경영자들의 모임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음
- 다른 회원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투자기술 향상
- 기업가를 멘토링하고, 젊고 혁신적인 회사들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공동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개인 엔젤 투자자들은 대부분 익명.
- 개별적인 투자금의 집합으로 기업가들의 자금 유치 가능성 상승
- 창투사와의 투자연결이 가능해 투자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용이
- 다른 엔젤 그룹과의 협업이 가능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정부주도로 하이테크 창업과 벤처캐피털 산업의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GDP 대비 R&D 비중과 1인당 창업 수, 그리고 1인당 벤처투자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하고 NASDAQ 상장기업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또한 창업단계의 벤처캐피털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2012년 기준 VC 펀드의 투자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창업배아단계(seed)에 11%, 초기단계(early-stage)에 26%, 중간단계(Mid-stage)에 49%, 후기단계(Late stage)에 14%를 투자하여 창업배아 및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37%를 차지하여 창업단계에 대한 투자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민간 엔젤 투자자와 엔젤 그룹이 활발히 활동하여 창업 예비 단계와 창업 단계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정부는 2011년 창업단계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외국 엔젤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엔젤 법(Angel Law)” 제정하였다. 이스라엘 벤처투자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국외로의 M&A 및 국외에서의 IPO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다.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TIP, 요즈마펀드 그리고 TNUFA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TIP) 운영

TIP프로그램 내에는 정부(OCS), 벤처캐피탈(VC), 예비 창업자 세 주체가 참여한다. 먼저 BI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VC는 정부기관인 OC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TI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BI와 OCS의 2단계에 걸친 심사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최대 50만불의 R&D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프라, 경영 및 행정지원, 교육훈련, 투자네트워크 등 창업 전반에 걸친 서비스도 지원 받는다. OCS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 입주 기업 중 91%가 성공적인 졸업을 하고 졸업기업 중 약 48%가 IPO나 M&A와 같은 '성공'창업에 이르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금 중 정부측인 OCS가 85%를 부담하고 VC들은 15%만 부담하는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측의 지분은 VC들이 가지게 되고, VC은 전체지분의 30~50%를 소유한다. 정부는 지분을 가져가지 않는 대신 기업이 성공시 원금이 회수 될 때까지 연매출의 3%를 지불받는다.

(2) 요즈마펀드

요즈마 펀드 이전에는 R&D 투자기업이 마케팅의 실패로 기업공개나 M&A가 거의 없었다. 정부의 R&D지원 정책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으나 마케팅 실패로 기업공개나 M&A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자본의 유입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대규모 R&D지원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공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정책당국은 자금과 경영/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1993년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VC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적벤처캐피탈인 요즈마 펀드를 설립하였다.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는 벤처캐피탈 관련 기법이나 지식을 보유한 외국 금융시장과의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Yozma 프로그램 도입하였다. 요즈마 펀드는 10개의 벤처 자금 펀드를 설립하여 미화 2억 달러를 조성하였고, 정부는 일반투자자(Limited Partner)로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요즈마 프로그램은 외국의 벤처캐피탈 파트너로부터 벤처캐피탈 운영 기법을 배우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동시에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경쟁력있는 민간의 유한책임형 벤처캐피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즈마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요즈마 그룹은 5년 이내에 처음 제공한 금액과 이자를 덧붙여 민간벤처캐피탈이 정부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매입옵션(call option)을 부여한다. 펀드 투자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정부의 요즈마지분을 'Libor+1%'의 금리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하락위험은 공유하고, 상승차익은 민간에 양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즈마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단순히 위험을 분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투자자가 정부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어 상향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요즈마 펀드를 민영화함으로써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개입으로부터 철수하였다. 1998년 요즈마 그룹이 직접 투자한 14개 기업을 경매로 통해 매각하였고, 10개 펀드 가운데 9개 펀드를 민간벤처캐피탈 파트너에 매각하였다. 총 2억 5,000만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하여, 이 가운데 1억 달러는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달러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였다. 정부 재원 1억 달러 중 8,000만 달러는 모태펀드 방식의 "Yozma funds"로 나머지 2,000만 달러는 정부 소유 펀드에 의해 관리하는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 방식의 "Yozma venture fund"로 운영하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펀드

가 적어도 하나의 외국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투자나 파트너십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3) TNUFA 프로그램: Pre-seed Fund

TNUFA 프로그램은 국가의 Pre-seed펀드로 프로젝트의 가장 최초 단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와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예비(pre-seed)단계 개인 발명가와 창업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에 의해 창업기업에 주어지는 최초의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실(OCS)에서 운영하며 선정기준은 기술혁신성, 수익창출 가능성, 창업팀의 능력과 팀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프로젝트별 5만 달러 한도로, 승인받은 사업예산의 85%까지 지원하며 임금 및 간접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조금(grant) 형태이나 매출 발생 또는 벤처투자 유치 등 성공 판정 시 최초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시까지 매년 매출액의 3~5%를 로열티로 상환하여야 한다.

3) 핀란드

(1) 핀란드 창업관련 환경

핀란드는 경제발전을 이루는 핵심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R&D를 장려하는 등 혁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가별 GDP대비 R&D투자비중은 3.84%로 이스라엘(4.25%)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연구원수는 1000명당 15.7명으로 35개국 중 가장 높다. 핀란드는 R&D 투자, 교육 경쟁력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수익과 고용을 창출할 고성장 기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적극적인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단계에서 벤처캐피털 시장 형성을 위해 다양

한 공적 투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핀란드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정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산학융합형 창업보육모델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는 산학융합형 창업보육모델을 근간으로 산·학·연이 물리적으로 근접하여 효과적으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핀란드 벤처캐피탈시장

핀란드 벤처캐피탈산업은 발전 초기단계에 있으며 독립적이고 젊은 소규모 벤처캐피탈회사로 특징 지워진다. 핀란드 벤처캐피탈시장은 투자 횟수나 회수의 수 측면에서 발전초기단계에 있고, 유한회사의 형태로 독립적이고 전문적 운영 벤처캐피탈회사는 1993년부터 설립되어지기 시작하였다.

핀란드 벤처캐피탈협회는 2010년 현재 37개 벤처캐피탈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공공투자자로부터 spin-off 되었거나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에 의해 설립되었다.

(3) 창업벤처의 자금조달 지원기관

창업초기기업에게 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의 정부 주요 기관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 핀란드산업투자(Finnish Industry Investment: FII)
- 핀란드기술혁신자금조달진흥원(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 핀란드혁신펀드(Finnish Innovation Fund)
- Finnvera
- Finpro
- 고용경제발전센터(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Center)

- 핀란드발명재단(Foundation for Finnish Invention)

핀란드산업투자(Finnish industry investment: FII)는 정부소유 투자회사로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벤처캐피탈펀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seed fund를 통해 특정목표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FII는 엔젤이나 벤처캐피탈과 공동투자를 하고 주로 받아 및 창업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핀란드기술혁신자금조달청(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TEKES)은 산학융합 시스템 확립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능력을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관련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TEKES가 지니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기술 창업융자 (Start-up Loan for Technology Companies)
- 테케스 기술전략설계 (Technology strategy design)
- 툴리 프로그램(TULI Programme)
- 기업 연구개발 자본융자 (Capital loans for R&D in companies)
- 테케스 기술 프로그램 (Tekes technology programmes)
- 첨단기술정책 연구 프로그램 (Research Programme for Advanced Technology Policy : ProACT)
- 테케스 타당성 연구자금 (Tekes Funding for Feasibility Studies : VARA)

SITRA (Finnish Innovation Fund)는 핀란드국회 감독하의 독립적인 공공펀드로서, 초기단계의 벤처캐피탈 투자가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 기업가와 엔젤투자자간의 매칭작업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Finnvera는 핀란드정부가 소유한 특화금융기업으로 고객에게 대여, 보증, 벤처캐피탈투자, 수출신용보증 등을 제공한다. Finnvera가 100% 지분소유하고 있는 Veraventure Ltd.는 신생혁신기업에게 지분투자를 하는데 이는 모태펀드로 지역의 벤처캐피탈펀드에 자금을 투입하여 seed fund의 경영회사로 역

할을 수행한다.

Seed Fund Vera Ltd는 투자 회사인 핀베라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초기단계에 있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되었으며 창업단계에 투자한다. 개별 기업의 최초 투자 한도는 50만 유로이고 200만~300만 유로의 후속 투자도 담당, 대부분 민간 공동투자자와 연합하여 투자한다.

VIGO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2009년 고용경제부와 기술혁신기금청(Tekes)이 신생의 고성장 기업이다. 발전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새로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대상 기업의 선정, 감독, 지도를 위해 민간의 벤처캐피털 전문가를 엑셀러레이터로 활용하며 기술혁신기금청과 Seed Fund Vera가 주로 자금을 지원한다.

Finpro는 핀란드회사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협회로서, 핀란드회사를 보증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회사, 종합적인 국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해외시장진출에 따르는 위험을 축소한다.

2. 우리나라 창업벤처정책

1) 일반지원정책

우리나라는 1997년 벤처특별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크게, 교수·연구원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창업지원,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 등에서의 우대를 포함한 금융지원, 법인세 및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상 특례, 스톡옵션, M&A지원 등이 있으며, 기타 방송광고요금 및 전력요금 할인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4-2>와 같다.

<표4-2>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구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산권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후 3년 이내에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 세연도부터 3년간 50% 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등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면제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재산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금융	코스닥 등록	- 상장심사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대 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전용단 지의건축금지 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집적시설 입주벤처기업특 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구 분		주요 지원내용	근거
해 외 진 출 지원	해외진출지원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박람회·전시회, 컨설팅, 시장조사 등)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 자문료 보조금지원)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과)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 사대상	특허법시행령
마 케 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 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기요금 대비 13.8% 인하(2008.1~)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 (한국전력)

자료: 홍길표외(2013) 재인용, 벤처인 제공자료 (2008-07-15 게재)

2)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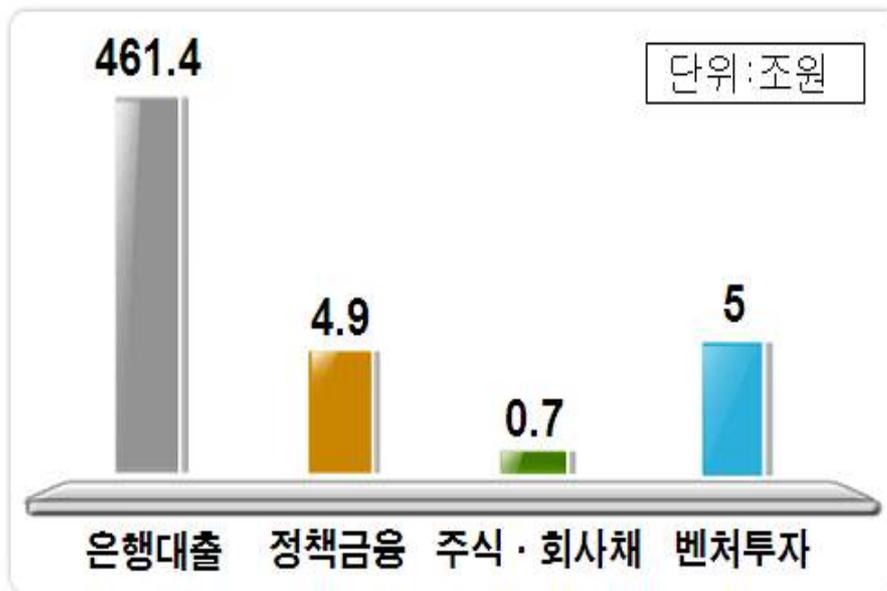
현재의 벤처자금 생태계는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이라는 단계
별 순환이 막혀 있어, 자금지원 방식이나 규모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
다. 정부는 2013년 5월 정부부처합동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
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조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의 현황 및 문제점

벤처자금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창업의
특성인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상응하는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초기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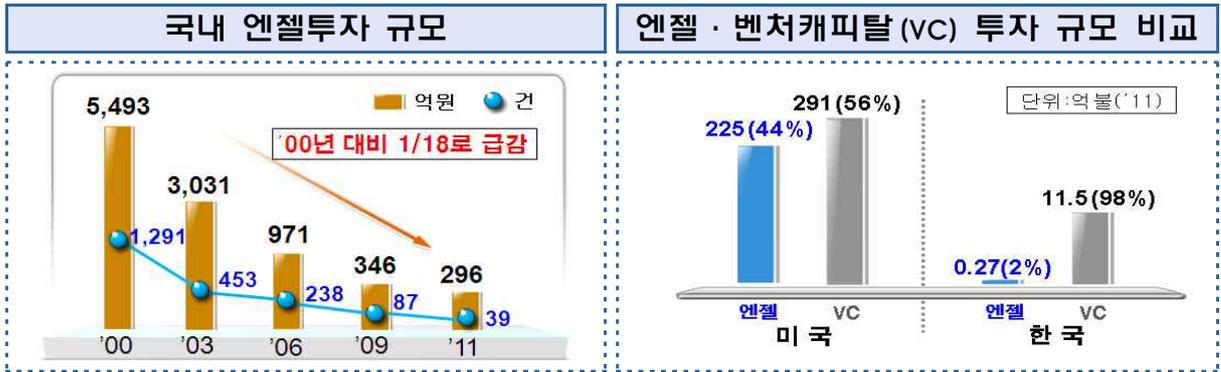
투자금융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금이 부족하고 융자중심의 자금조달환경으로 고위험·고수익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고 특히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증가하여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99%가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4-1> 중소기업 자금조달원별 자금 공급(2012년)



둘째, 창업 초기에는 엔젤투자의 역할이 절대적이거나, 우리나라의 엔젤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225억\$)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우리나라 엔젤투자는 전체 벤처투자(11.77억\$) 대비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벤처붐과 함께 엔젤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5,493억원) 그 이후 벤처버블붕괴와 함께 엔젤투자가 급속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296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창업초기기업에 중요한 자금조달기능을 하는 엔젤투자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기술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아가 창업성공률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그림4-2> 국내엔젤투자규모 추이와 미국과의 비교



셋째, M&A 등 중간회수시장이 부재하여 코스닥 상장 이외에 벤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는 기업 R&D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기술획득 수단인 M&A투자는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M&A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이 직접 R&D 수행을 선호하는 제도와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세제차원에서 직접 R&D를 수행하거나 특허권 등 명시적 기술취득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주식교환 방식의 M&A 경우, 매도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금을 차입해야 하고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도 과도한 양도·증여세 등의 부담이 따른다. 이에 따라 M&A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성공 벤처기업인의 재투자 여건 및 실패기업인의 재기 기회가 부족하여 벤처자금의 생태계내 환류를 저해하고 있다. 주식교환 즉시 과세, 과도한 세제부담 등으로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재투자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 또한 건강한 실패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함에 따라, 실패한 경험을 활용한 새로운 벤처투자·창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패한 벤처기업이 구조조정·회생되어도 관련 기업인은 계속적으로 채무상환, 금융이용 제한 등으로 재기와 재도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표4-3>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방안

	초기/창업 단계 (0년~3년)	중간/성장 단계 (4년~9년)	회수/성숙 단계 (10년~15년)
세계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 *5천만원까지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40→50%, 캡 예외) *기술형 창업기업까지 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매수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직접R&D투자에 준하는 감면) *매도기업 증여세 부담완화 (특수관계없는 정상거래 M&A의 경우 증여세 대상에서 원칙 제외)	재투자 유인확대 *회수금 재투자시 양도세 이연 *주식교환시 새주식 매각까지 양도세 과세 이연
민간 투자	클라우드 펀딩 신설 *공시부담 등 규제완화 *온라인 펀딩플랫폼 허용	M&A 절차·부담 간소화 *계열사 편입 부담 완화(3년) *중소기업 졸업유예(3년) *소규모·간이합병 적용대상 확대	코넥스 신설 *심사·공시, 투자제한 완화 *거래세 인하, 양도세 면제 등
규제 완화			코스닥 독립성·전문성 강화 *조직·상장심사 제도개편 등
정책 자금	미래창조펀드(초기형) *모태·정책금융 등, 2,000억원 전문엔젤 매칭R&D	미래창조펀드(M&A, 성장형) * 3,000억원 지식재산권 보호펀드 *성장사다리내 1,000억원 추가	재기기업 투자·엔젤매칭 펀드 * 성장사다리, 1,000억원 활용
예산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기보, 500억원	M&A보증/ 융복합 맞춤형보증 *신보, 1,000억원/기보, 3,000억원	성장사다리 펀드 * 정책금융+민간, 2조원 재창업자금 * 400억원 (→ '17. 1,000억원)
		벤처멘토링 창업펀드(1,000억원) 벤처멘토링단 구성·운영 (성공한 벤처1세대, 해외동포 등)	
벤처 창업 기반	창업플랫폼 확대 *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보육·투자·R&D 연계 기술창업 *개방형 공공정보 활용 창업	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 기술입치, 해외특허지원, 처벌강화 M&A 인프라 확충 *M&A정보거래소 기능 강화 *기술평가정보 종합D/B 공개	제도전 환경 개선 *친인척, 임원 등 연대보증 폐지 *회생기업 관련인 금융제한 완화 *기업회생절차 기간·비용 감축
인력 유입	연구인력의 창업촉진 *정부출연(연) 창업친화 지표 도입 *휴·겸직을 통한 창업기업 참여	벤처 스톡옵션 개선 *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분납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옵션허용 벤처비자 → 창업비자로 확대	

2)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방안

2013년 범부처 차원에서 벤처창업자금의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용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변경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의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5-3> 참조). 선순환방안이 초기/창업단계, 중간/성장단계 그리고 회수/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초기/창업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re-Angel로서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신설한다. 클라우드 펀딩을 위해 공시부담 등을 완화하여,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도록 한다. 둘째로 Angel 투자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확대하고(50%까지), 투자 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셋째 전문적 엔젤투자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전문엔젤투자에 대해 매칭 R&D를 지원(업체당 2억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한다. 넷째, 민간자금 시장실패 분야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여 민간과 함께 5,000억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 미래창조펀드는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되, 초기 전문투자 계정에 40% 배정하고 창업초기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하여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한다.

다음에는 중간/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한 조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획득 등 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R&D에 준하는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한다. 즉, “기술혁신형 M&A”로 인정되는 경우, 세제상 특례 도입하여 매수기업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 M&A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매도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

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M&A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M&A로 인해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둘째로 M&A·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확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

회수/성숙단계의 기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공한다. 먼저 회수자원의 생태계 재유입 여건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재투자 유인 강화하기 위해, 실제로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만 과세하고,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도 창업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 도입한다. 또한 국·내외 성공벤처인의 후배세대 양성기반 확충한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 후배 청년창업가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성공 벤처인, 해외동포 등 우수한 멘토링 자원을 확보하여 활용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기본적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3)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해 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 등 시장실패 영역의 모험자본 역할과 성장·회수 단계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중심에서 민간 자금의 참여를 통해 민간중심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소벤처 투자금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적 모험자본의

부족하다. 벤처·중소기업 투자금융은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창업영역에 집중하여 자금을 공급하지만 적극적 모험자본 역할에 한계가 있다. 창업 초기와 엔젤투자 영역에서 자금공급 기능이 부족하다. 둘째, 칸막이식 운영자 규제로 성장단계별로 적합한 자금을 지원하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현행 성장 단계별로 운영자를 규제하고 있어, 유능한 운영자에 의한 지속적인 맞춤형 자금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경직적 규제 등으로 민간자금의 참여가 부진하다. 회계처리 기준 등 건전성·비교가능성을 위해 일반화한 기준이 벤처투자 등 예외적 상황에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 자금, 연기금과 민간자금 등 투자재원이 통합 투자풀을 형성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로 건강한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 노력 부족하다. 벤처캐피탈을 고유한 산업분야로 보지 않고 벤처기업 육성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대출·VC·보증기관·피투자 기업간 유기적 연결이 부족하다.

정부는 2013년 10월 중소·벤처 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선도적 모험자본 투자기능 활성화, ② 개방적 운영자 규제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③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방안, ④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먼저 선도적 모험자본 투자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모험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모험투자 관련 건전한 시장 관행을 형성하도록 펀드운영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였다. 개방적 운영자 규제 설정과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신기술금융조합(신기술금융사) 투자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투자 대상 규율 방식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고 투자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신기술금융조합의 자산운용 대상을 합리화하여 업무범위와 운용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지분 관련 회계처리 관행 개선하였다. 회계처리기준 범위 내에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관행을 개선하거나 합리적 사유인 경우 원가평가 할 수 있는

관행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회사 편입조건을 완화하여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 경우 특정회사 지배목적의 경우와 구별하여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를 완화하였다.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 GP들로 구성된 GP 협의회를 구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GP 협의회와 보증·대출기관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 구성하고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4) 한국은행의 기술형 창업지원제도 제도

한국은행은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을 위해 2013년 4월 기술형 창업지원제도 신설하였다. 지원 대상으로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으로서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②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③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기술 보유기업 ④ 기술평가전문기관의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 ⑤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한국은행자금은 신용대출 및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의 경우 50%, 보증서담보대출 및 물적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25%를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기술형 창업지원제도의 3조는 금융기관 대출기준으로는 6조에서 12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의 기술형 창업지원제도에 따른 금리는 0.5%인데 이에 따라 은행은 기술형창업기업대출 금리를 최소한 신용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포함)은 151bp, 보증·담보대출은 79bp 감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기술형 창업기업대출 금리는 신용대출(지식재산권담보대출 포함)은 평균 4.45%, 보증·담보대출은 평균 3.42%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4월 신설했지만 활용이 부진했던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은의 대출 지원비율을 신용대출의 경우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의 경우 25%에서 50%(저신용등급은 75%)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술형창업기업 범위도 확대해 신용보증기관이 기술력 평가 등을 심사항목으로 하는 신용보증에 근거해 대출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서비스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용 기준을 매출액 대비 2%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표4-4〉 기술형창업기업의 범위

구 분	확인서·등록증	확인서 등 발급기관	근거 법률 등
I.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① 특허증	특허청	특허법
	② 실용신안증	특허청	실용신안법
II.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기술 보유기업	③ 신기술인증서	정부 부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²⁾
	④ 신제품인증서	정부 부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⑤ 기술평가인증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술평가인증기관	기술평가인증기관과 금융기관의 협약
	⑥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정부 부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III. R&D 기반 창업기업	⑦ R&D성공기술 확인서	정부 부처	각종 정부 고시 등
	⑧ 연구개발특구 소재 증빙서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⑨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인가 증빙서류	정부 부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⑩ 지식재산 보증 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기관 규정 등
IV.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기업 ³⁾	⑪ 재무제표	-	-
V. 기 타	⑫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선정		

제5장 충청남도의 창업벤처기업육성 전략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충청도 차원의 투자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충청도 차원의 투자금융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충남지역의 지역엔젤매칭펀드를 설립한다. 둘째, 충청남도 기반의 벤처캐피탈을 설립한다. 셋째, 지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다. 넷째, 중앙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금융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1.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 설립

정부(중소기업청)는 엔젤펀드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단위(430억원), 지역(230억원), 대학(210억원)등 엔젤투자매칭펀드 총 870억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엔젤투자매칭펀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역할하고 엔젤관리협력기관으로는 전국단위와 대학에 대해서는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지정되고 지역단위 차원에서는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지정되었다. 매칭비율은 엔젤투자자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재창업 기업의 경우 2배수 이내)로 투자기업은 1회 2억원 한도 (총 투자 2회, 누계 3억원)이고 엔젤투자자는 개별 연간 2억원, 엔젤클럽 연간 20억원, 법인형 엔젤 연간 10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격엔젤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건을 완화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엔젤투자자를 엔젤클럽 및 개별엔젤투자자에서 엔젤투자 전문회사,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으로 확대한다. 둘째, 적용범위를 국내엔젤투자자에서 국외엔젤투자자로 확대한다. 셋째, 적격투자실적이 없더라도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적격엔젤투자자로 인정(지역단위펀드, 대학펀드)한다.

엔젤투자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에게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제공하였다. 즉, 개인엔젤투자자에게 펀드보유주식 50%(법인형 엔젤 투자자는 20%)까지 콜옵션을 부여하여 주식이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은 공유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도록 하였다.

다음에는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 기업 매칭 요건은 창업지원법상 창업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해당 지역소재 창업초기기업(본점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소재)으로 기업가치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창업초기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단, 직전연도 매출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엔젤투자자 매칭요건으로는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 개별엔젤투자자, 그리고 지역창업관련기관이다. 첫째, 엔젤클럽을 통한 투자자는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으로서 다음의 일정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회장,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고 최소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것
- 적격투자실적(2건 이상이고 건당 500만원이상으로 합산금액 4,000만원이상 신주투자) 또는 1억원 이상 신주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인 이상
- 분기별 1회 이상 클럽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것
- 연 1회 이상 신주투자실적(2천만원 이상)을 유지할 것

그리고 소속 클럽이 엔젤활동 실적이 있으면서, 3명 이상의 회원이 공동투자 형태로 2천만원 이상을 투자(1인당 500만원이상)해야 하고 엔젤클럽을 통해 투자가 된 경우 매칭투자금액의 2%를 클럽에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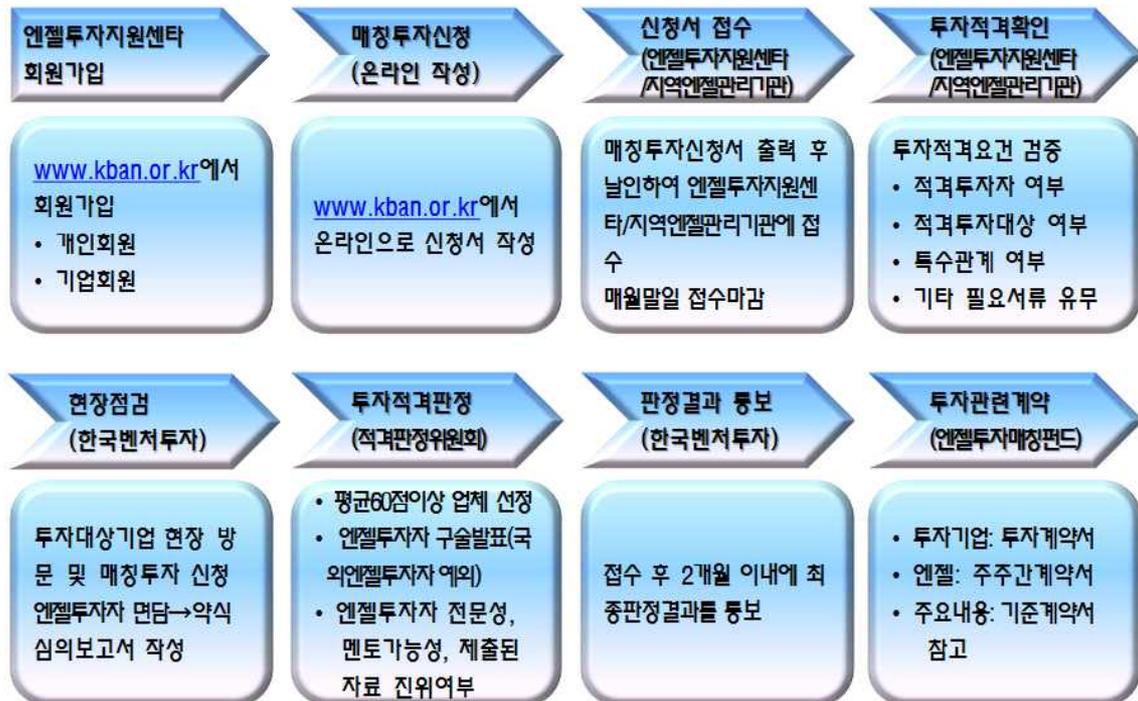
둘째로는 개별엔젤투자자이다. 개별엔젤투자자로는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하는 자와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 최근 2년간 적격투자(2건 이상 & 건당 500만원이상으로 합산금액 4,000만원이상 신주투자) 실적 또는 1억원 이상의 신주투자실적을 보유
- 센터 등록 후 신주투자실적(2,000만원이상)과 최근 6개월 내 엔젤활동(교육, 포럼, 세미나, 기업IR등 참여사실)이 있는 자로서 센터에서 적격성 심의를 통과한 자
- 엔젤투자 전문성과 멘토가능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가(벤처천역클럽 또는 상장기업 대표이사 경력을 보유한 자 중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가 추천한 자로서 센터의 적격성 심의를 통과한 자)
-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국내개별엔젤투자자와 동등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엔젤투자자

셋째로는 지역창업관련기관이다. 지역창업관련기관이란 지역 내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창업관련기관으로 지자체 또는 지역엔젤관리기관이 추천한 기관을 의미한다.

<그림5-1> 엔젤매칭펀드 신청절차



매칭펀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엔젤펀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엔젤투자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매칭투자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지역엔젤관리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투자적격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현장점검을 통해 투자적격판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후 판결결과가 통보되고 투자관련 계약이 이루어진다. 상세한 절차는 <그림5-1>과 같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총 8개 펀드, 890억원을 운용중이다. 그 중 전국단위 펀드는 3개로 640억원, 지역단위 펀드는 5개로 250억원이 결성되어 운용 중이다.

<표5-1> 엔젤매칭펀드 운용 현황

구 분		결성금액 (억원)	운용기간	GP
전국 단위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1호	100	2011.12.05.~2021.12.04	엔젤투자지원센터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	330	2012.08.16.~2022.08.15	엔젤투자지원센터
	대학 엔젤투자매칭펀드	210	2012.08.16.~2022.08.15	엔젤투자지원센터
지역 단위	경남엔젤투자매칭펀드	50	2012.06.05.~2022.06.04	경남신용보증재단
	부산엔젤투자매칭펀드	50	2012.06.21.~2022.06.20	부산테크노파크
	광주엔젤투자매칭펀드	50	2012.08.03.~2022.08.02	광주테크노파크
	강원엔젤투자매칭펀드	30	2012.10.19.~2022.10.18	강원산업경제진흥원
	대구엔젤투자매칭펀드	50	2012.11.23.~2022.11.22	대구테크노파크
합 계		870		

지역단위 펀드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경남, 부산, 광주, 강원, 대구 등 5개이다. 펀드결성규모를 보면 현재 운용중인 매칭펀드가 50억 내외로 모태펀드에서 40억원, 지자체 등에서 10억을 출자한다.

지역단위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였고 주목적 투자는 지역 내 창업초기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에 8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펀드 출자

자로는 형식적인 업무집행조합원(GP)인 한국벤처투자자와 유한책임사원(LP)인 한국모태펀드(79% 출자), 그리고 지자체 등이다. 실질적인 업무집행조합원은 지방정부마다 다른데,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의 경우 테크노파크이고 추의 테크노파크이고 경남의 경우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강원외의 경우 산업경제진흥원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벤처투자는 1%를 출자하고 한국모태펀드는 79% 그리고 지자체 등은 20%를 출자한다. 매칭투자비율은 엔젤투자자(조합)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이고 단 재창업 기업의 경우 최대 2배수 이내이다. 그리고 기업당 투자 한도로는 투자금액은 1회 2억원 한도이고 1회에 한해 추가 투자를 허용하는데 총 투자액은 2회이고 누계 투자액은 3억원 이내이다. 그리고 기업당 최소투자액은 2,00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의 설립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자금은 50억원으로 하고 한국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태펀드에서 40억원을 출자하고 충청도를 비롯한 지역차원에서 10억원을 설립한다. 지역에서는 산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현대제철, 그리고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은행, 그리고 충남벤처투자협회에서 출자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은 신용충남보증재단이나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엔젤투자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젤투자자로서 적합한 대상으로는 충남지역 출신의 성공벤처가나 혹은 현재 벤처경영인, 일정한 재력을 지닌 퇴임한 기업가, 벤처기업가 그리고 대기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산업단지, 그리고 벤처투자협회, 기업인연합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엔젤투자협회와 엔젤투자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2. 충남지역 기반의 벤처캐피탈 설립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의 제공 주체는 투자조합과 투자회사(벤처캐피탈사)로 구분 가능하다. 자금을 모으는 vehicle 성격의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규정을 준용하고 사모 방식의 투자자간 계약 형식이고 벤처캐피탈사는 고유 계정을 통한 직접투자 방식과 투자 조합을 통해 자금을 모집·운용하는 GP 역할을 수행한다. 벤처캐피탈사는 창투법상 창투사, 여전법상 신기술금융회사, 벤처특별법상 유한회사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먼저 벤처캐피탈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창투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주요 업무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창업자(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따라서 충남지역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이 설립되면 직접투자나 혹은 투자조합의 형성으로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수 있고, 나아가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경영기술지원을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정보를 토대로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와 각종 경영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차원의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은 50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2인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 등인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

- 다음 기준의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이공·상경제열 박사
 -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에서 2년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 경영·기술지도사, 석사(이공·상경제열)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금융기관 및 창투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투자심사(대출 심사는 제외)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이공계열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벤처캐피탈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대표이사 및 임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연체등록자(대표이사만 적용)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대표이사만 적용)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당시 임원인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러한 벤처캐피탈의 설립 요건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전문인력, 자본금 조달, 벤처캐피탈 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설립을 주도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이나 업종선택, 그리고 조합 운용 등에 있어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문인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우수 벤처캐피탈에

서 근무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벤처캐피탈시장에는 투자 경험을 지닌 우수한 전문인력이 일정 정도 존재하고, 또한 충남지역이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고급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잇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조달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구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대경창업투자의 경우 자본금은 100억원이고 개인이 60억원, 대구시 및 경북도의 간접투자가 각각 5억원, 대구은행이 15억원, 기업이 15억원을 조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로 할 때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투사의 경우에도 자본금은 100억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충남지역에서도 은행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은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충청은행을 인수하였고 또한 최근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은행 역할강화 상호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하나은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금고역할을 하는 은행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기업의 출자로는 대기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현대제철이나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한화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이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설득하고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활동을 통해 재력을 축적한 지역기업인의 참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한편 충남지방자치단체도 충남통상진흥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일정 정도 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벤처캐피탈의 각종 인프라구축이다. '13년 정부가 발표한 벤처캐피탈활성화방안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혁신기업 등 벤처·중소기업 창업·성장하는 과정은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존재한다. 따라서 효과적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간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상설 공간으로서 Co-working place 조성이 필요하다. 네트워킹 구축방안으로 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GP들로 구성된 'GP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투자기업과의 미팅에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투자기업 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투자, 유망기업 공동 발굴, 투자 유치 희망기업들에게 기업 설명회 기회를 제공한다. 다

음으로는 충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창업사관학교, 대덕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벤처산업단지 등 주요 창업관련기관등과 MOU를 체결하여 창업을 유도·지원하고 창업 단계부터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우수 인력을 통한 경영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3. 지역벤처조합 설립

1) 충남 중소기업투자조합 현황

충청남도(충남TP)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6기의 중소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였다,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의 형식은 충남도에서 충남TP에 출자하여 충남TP가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간접형식을 취하였다. 2013년 12월 현재 운용 종료된 투자조합은 충남벤처투자조합 1,2,3호, 충남경기상생펀드 등 4개이고 현재 운영중인 펀드는 경기충남상생펀드, 충청권경제활성화펀드 2개이다. 투자조합별 결성금액과 운용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표5-2>와 같다.

<표5-2> 충청남도 관련 투자조합 현황

조합명	결성금액 (출자액)	운영기간	펀드운용사
충남벤처투자조합 1호	100억원 (30억원)	00.08.09~05.08.08 (5년 / 해산完)	신보창업투자
충남벤처투자조합 2호	50억원 (8억원)	01.04.26~06.04.25 (5년 / 해산完)	신보창업투자
충남벤처투자조합 3호	100억원 (30억원)	04.07.07~10.07.06 (6년 / 해산完)	호서벤처투자
충남경기상생투자조합	250억원 (50억원)	06.03.24~11.03.23 (5년 / 해산完)	한화기술금융
경기충남상생투자조합	250억원 (50억원)	07.07.20~14.07.19 (6년 / 회수기간)	SBI인베스트먼트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	295억원 (30억원)	12.02.01~19.01.31 (7년 / 투자기간)	대덕인베스트먼트
합 계	1,045억원 (198억원)	-	-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은 도재원에서 10억원, TP재원에서 20억원 출자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투자조합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TP는 현재까지 총 6개의 투자조합을 통해 83개사에 876억원의 투자를 집행하였는데, 그중 충남지역에 대한 투자는 24개사에 329억원을 투자하여 전체투자기업의 28.9%, 투자금액의 37.5%를 충남지역에 투자하였다.

<표5-3> 충남도 관련 투자조합 투자 실적

조합명	결성금액 (TP출자액)	투자기업수 (충남지역)	투자금액(억원)
충남벤처투자조합 1호	100억원 (30억원)	22(5)	95(34)
충남벤처투자조합 2호	50억원 (8억원)	9(4)	41(19)
충남벤처투자조합 3호	100억원 (30억원)	8(4)	86(47)
충남경기상생투자조합	250억원 (50억원)	18(4)	246(100)
경기충남상생투자조합	250억원 (50억원)	15(5)	250(90)
충청권경제활성화투자조합	295억원 (30억원)	11(2)	158(39)
합 계	1,045억원 (198억원)	83(24)	876(329)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투자조합 운영수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투자조합 운영 수익에 있어서는 일부 투자조합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대다수의 투자조합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익을 본 투자조합은 충남벤처투자조합2호, 충남경기상생투자조합으로 2개 조합이고, 손실을 본 투자조합은 충남벤처투자조합 1,3호, 경기충남상생투자조합이다. 전체 결성금액 중 투자대비 회수율이 70% 수준이고 충남TP 출자금 기준으로 투자회수율은 83%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보면 198억원을 투자하여 27.1억원의 투자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14년간 투자하였으므로 연 약 2억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 충남지역 24개사에 투자하였으므로 1개업체당 지난 14년간 약 1.13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조합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

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지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는 것은 비용차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은 운영주체가 지역기반을 둔 GP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나 지역기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5-4> 충남도 관련 투자조합 운용 실적

투자조합명	투자조합 전체(억원)			충남TP(억원)		
	결성금(A)	운영수익(B)	운영결과(A-B=C)	투자금(a)	운영수익(b)	운영결과(a+b=c)
충남벤처투자조합1호	100	-52.3	47.7	30	-4.6	25.4
충남벤처투자조합2호	50	-0.5	49.5	8	0.2	8.2
충남벤처투자조합3호	100	-34.7	65.3	30	-5.5	24.5
충남경기상생 중소기업투자조합	250	2	252	50	0	50
경기충남상생 중소기업투자조합	250	-140	110	50	-17.2	32.8
충청권경제활성화 투자조합	295	-	-	30	-	-
합 계	1,045	-225.5	524.5	198	-27.1	140.9

자료: 충남도청 내부자료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규정을 준용하고 사모 방식의 투자자간 계약 형식을 띄는데 3가지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투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의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이다. 이 모두는 법적으로 유한회사이다.

설립 목적과 소관 법률 등에 따라 조합과 해당 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창투조합은 창투법에 의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로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이다. 창투조합 운영은 창투회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금융사업자는 창투회사와 공동 GP 형태로만 참여 가능하다.

조합설립요건으로는 출자금이 30억원 이상으로 49인 이하의 유한책임조합원 수로 구성된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GP)는 최소 출자비율이 출자금 총액의 1%이상이어야 하고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다. 한편 창투조합은 등록 후 3년 이내 자본금 40%금액을 투자대상에 사용해야 한다.

벤처조합은 벤처법상 벤처기업 창업과 벤처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벤처조합은 창투사, 신기술금융사업자 및 벤처 전문인력을 갖춘 유한회사(LLC)가 운영자(GP)로 참여 가능하다. 유한회사(LLC)는 벤처투자전문인력과 조합결성금액의 1%이상 출자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조합설립요건은 창투조합과 동일한데 벤처조합이 결성되기 위해서는 모태조합 출자가 필수조건이다.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신기술금융업자가 조합 운영을 담당한다.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이고 조합설립요건으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조합 유형별 비교는 <표5-5>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표5-5> 투자조합 유형별 비교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 부처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	- 금융위원회
조합 설립 요건	- 출자금 총액: 3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이하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	- 모태조합 출자 (필수조건) - 출자금 총액: 30억원 이상 - 유한책임조합원수: 49인이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율 출자금 총액의 1%이상 - 존속기간: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 비율 출자금 총액의 1%이상 - 존속기간: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 자금을 관리·운영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 (필수) - 신기사, LLC 등은 창투사와 공동GP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투사, 신기사, LLC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사
투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투자 실적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 인수 - 신규 CB, BW - 중기청장 인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는 주식, CB, BW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투자 이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후 3년이내 자본금 40%금액을 투자대상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2) 충남 벤처투자조합 설립

상기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투자조합결성에 대한 조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30억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역투자조합이나 타 투자조합의 출자금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출자금 규모는 200억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자금은 충남도에서 TP를 통해 일정 정도(20억원)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 대기업, 은행, 상공회의소, 충남벤처기업협회 그리고 개인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모태조합과 정책금융 공사가 출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운용사(GP)는 지역벤처캐피탈이 수행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벤처캐피탈의 설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 지역 소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는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표5-6> 참조).

<표5-6> 충남벤처투자조합 설립방안

항목	내용
(1) 개념	· 지역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하여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2) 형태	· 창투조합이나 벤처조합의 형태
(3) 설립 요건	· 30억 원이상의 출자금, 49인 이하의 유한책임조합원, 등록 후 3년 이내 자본금 40%금액을 투자대상(창업7년 이내의 중기, 벤처기업)에 투자 ·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모태조합출자가 필수
(4) 현황	· 2012년 말 현재 투자조합은 전국적으로 창투조합 330개과 벤처조합 82개 총 412개가 조합결성 총액은 9.3조에 달함
(5) 충남도 출자 조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TP)에서도 '00년 이후 6개(현재는 2개 운영) ✓중소벤처투자조합에 198억원 출자하여 83개사에 876억원 투자, 그 중 충남지역 투자는 24개사 329억원 ✓투자펀드의 자금은 「도(출연)→TP(출자)→투자조합」방식을 통해 출자 ✓전체투자기업의 28.9%, 투자금액의 37.5%를 충남 지역내 투자 ✓충남도는 198억 투자하여 27.1억원의 순손실(13.7%) ✓지역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고 순손실을 보는 이유: 유망 중소벤처기업 제한, GP(운영기관)의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정보 비대칭성)
(6) GP로서의 기능	· 지역벤처캐피탈사의 설립 시, GP로서 지역투자조합 설립 운영 가능(모태조합, 정책금융공사, 지자체 출자)

4. 중앙정부와 대기업과의 협력

(1) 중앙정부의 공적자금을 활용한 지역펀드 조성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모태펀드가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모태펀드는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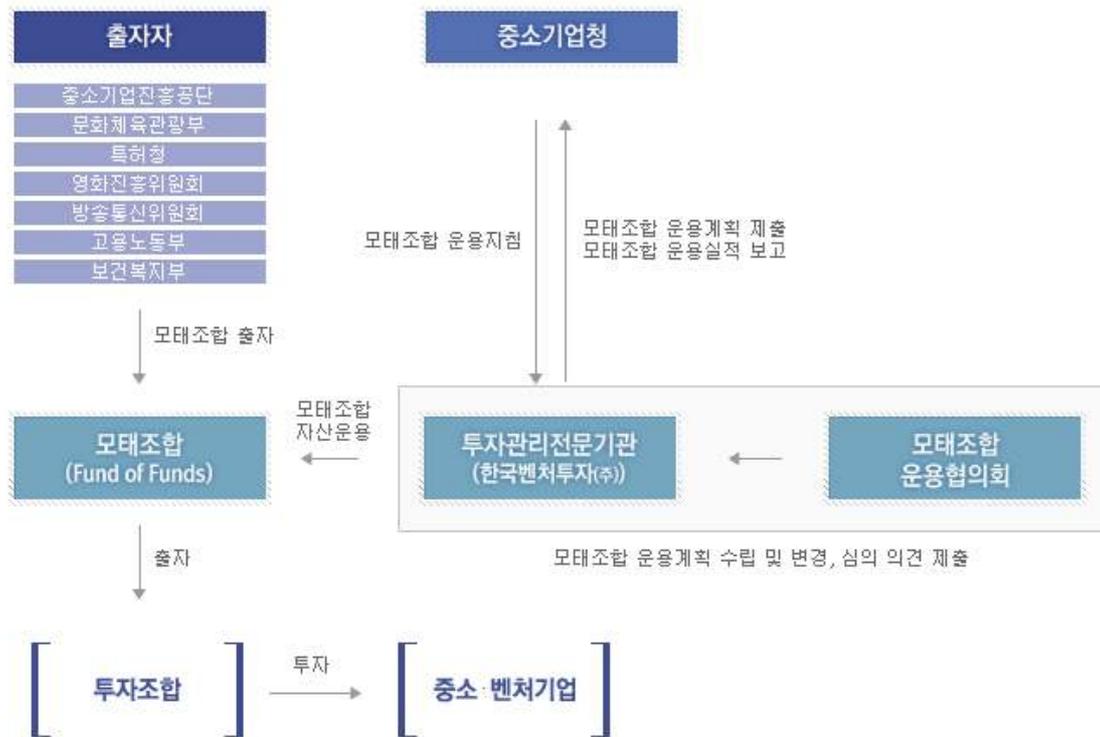
투자(주)이 담당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자금 조성규모는 1조4,791억원에 이르고 있다. 투자재원 공급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태펀드의 주 출자분야는 계정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진계정: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② 문화계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 ③ 특허계정: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의 이전알선과 사업화 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 ④ 방통계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기통신역무제공 및 서비스 등 방송통신사업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 ⑤ 영화계정: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⑥ 보건계정: 보건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중진계정은 창업초기기업이나 지방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계정이므로 충남지역벤처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5-2> 모태펀드 운영구조



자료: 한국벤처투자(주)

다음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하는 또 다른 공적금융기관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자금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기업의 심사하여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으로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2013년 3월 현재 정책금융공사는 중소·벤처펀드 39개를 조성하여 PE펀드 30개를 포함하여 정책자금금융공사는 3조 6,169억원을 약정하였다.

이렇게 모태펀드나 정책금융공사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적자금이 지역펀드조성에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정부차원의 공적자금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중앙정부의 벤처투자 펀드 적극 활용(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전국 엔젤매칭펀드 등)

정부는 2013년 중앙부처와 민간이 함께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하였다. 미래창조펀드는 기재부, 미래부, 금융위 그리고 중기청

이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조성하는데 민간이 3,500억원 정책금융이 1,000억원 그리고 모태펀드에서 500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단일 펀드로 구성·운영하되, 계정분리(divided account) 방식을 취한다. 즉, 펀드 내에 주목적이 되는 투자 대상에 따라 계정을 설정·관리하는데 각 계정 단위로 투자, 정산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로 설립하고 모태펀드 운용사가 총괄한다. 그리고 계정별로 전담 운용사가 지정된다.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되, 초기(3년 이내) 전문투자 계정에 40%(2,000억원) 배정하여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창업초기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하여 민간 출자자 수익 우선배분 인센티브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공자금 우선손실 충당 방식 계정도 200억원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투자자에게 이익을 높이고 손실을 줄여주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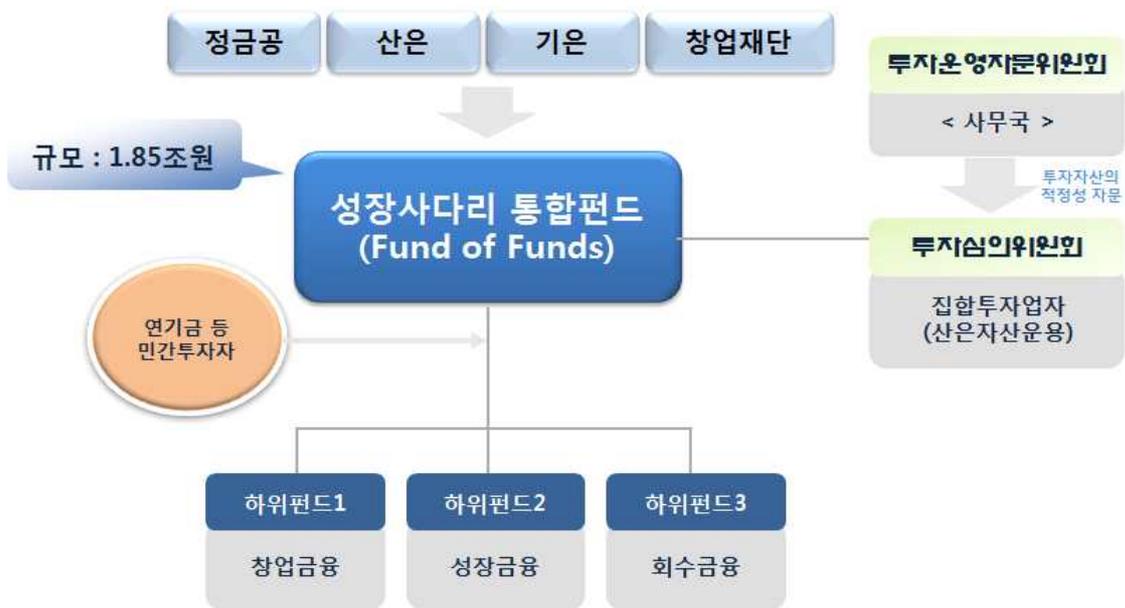
정부는 창업부터 성장을 거쳐 궤도에 오르고 회수에 이르는 건강하고 연속성 있는 창조경제의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의 목적은 창업금융, 성장금융, 회수금융 등 3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활발한 창업을 촉진하는 창업금융. 둘째는 투자형 기업금융에 기반하여 성장 단계별 자금공급 체계를 형성하는 성장금융. 셋째는 기업생태계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 도약하는 통로가 되는 회수금융

향후 3년간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창업가재단을 통해 1.85조원을 조성하고 민간투자자와 함께 6조원을 각종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fund of funds를 지역펀드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이나 보험업은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15%이상 투자할 경우 개별기업 투자와 동일하게 자회사로 편입하고 신고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 경우 특정회사 지배목적의 경우와 구별하여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에 대한 30% 미만 투자의 경우에는 자회사 편입 배제와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은행·보험사의 경우 간접투자인 PEF의 30% 미만 투자에 대해서는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를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투자조합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지역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5-3> 성장사다리펀드 구조



자료: 정책금융공사 홈페이지

<표5-3> 1차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및 운용

구 분			성장사다리펀드 (A)	민간자금(B) <매칭비율>	합계 (A+B)
창업	스타트업	자체프로그램 ¹⁾	1,250	1,250 <50>	2,500
		매칭프로그램 ²⁾ (초기창업)	500	3,000	3,500
성장	Growth	자체프로그램	-	-	-
		매칭프로그램	1,000	5,000	6,000
	M&A / Buyout	자체프로그램	1,000	1,000 <50>	2,000
		매칭프로그램	-	-	-
	지식재산	자체프로그램	500	500 <50>	1,000
회수	세컨더리	자체프로그램	1,000	1,000 <50>	2,000
		매칭프로그램	-	-	-
	KONEX	자체프로그램	250	1,500	1,750
	재기지원	자체프로그램	500	500 <50>	1,000
합 계			6,000	13,750	19,750

(3) 충남도(지사) 중앙부처와의 주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인프라 구축

매년 중앙정부(중기청) 차원에서 막대한 벤처자금, R&D 자금이 기업에 제공되고 있으나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일정 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충남도가 중앙부처와의 주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공동 R&D 설명회, 공동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면 지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사관학교, 지역별 클러스터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충남도에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내 벤처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가, 벤처기업인, 그리고 엔젤투자가 등 지역내 엔젤 포럼운영을 운영하여 창업벤처기업인과 엔젤투자가,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 대학교의 협력을 통한 벤처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벤처기업과 투자에 대한 이해 및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수한 인력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창업을 지원하거나 창업 후 실패한다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협업이 가능하도록 충남도가 나서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틀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대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내 대기업은 벤처기업에게는 두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시장 역할을 한다. 하나는 중간재를 포함한 생산물품의 구매처로서 다른 하나는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의 M&A를 통한 회수창구로서 시장이다. 대기업이 일정 부분 참여하는 조합이 투자한 기업물품에 대해서는 좀 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고 특히 대기업도 무한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open innovation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검증된 현실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텔 같은 대기업은 1년에 적어도 10~15개의 신생 기업을 M&A하여 신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2012년 4월9일 모바일 사진 앱개발업체인 종업원 13명에 불과한 창업 1년된 인스타그램이란 기업을 10억\$(1조원)에 인수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생 벤처기업의 최대목적은 대기업에 의해 제값에 M&A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M&A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벤특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지분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이나 현대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충남도가 노력하여 대기업의 M&A 2~3건만 성사시키면 지역차원의 M&A생태계가 확립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부록

부록1. 클라우드펀드

■ 배경

□정부는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추진

□금융위원회는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한 클라우드펀딩의 제도화 및 투자자보호 등 보완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클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을 발표(2013.09.26.)

■ 개념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 법제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

1. 제도의 기본 틀

□(규율대상)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자본시장법에 규정

- 증권의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의 “공모”

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규율방식) 증권발행인(창업기업가 등)의 신청을 받아 클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주관하는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 를 신설

- 同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을 통해 투자형 클라우드펀딩 이용시 준수할 사항 (투자한도, 투자정보 제공 등)

의 이행력을 확보

2.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한 장치 마련

□(중개업자 진입요건 완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최소한의 필요자본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도록 함

※ 일반 투자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이 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필요자본도 5억원 수준을 고려

□(공시규제의 완화)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를 모집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모집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하인 연간 7억원 내외 수준을 고려

-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은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이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부담

이 크게 완화

□(발행가능 증권의 다양화) 자금을 모집하는 창업기업의 실제 발행수요와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분·채무·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허용

□(발행인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기간중 중개업자를 통해 증권 발행인(창업기업 등)과 투자자간 의사소통 허용

※ 일반공모의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증권신고서로 한정되나,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체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을 허용(단,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투자정보를 정정게시토록 함)

3.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투자금액 제한)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시 공시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
고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
-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기본취지가 “십시일반” 으로 자금을 모집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

□ 자본시장법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요건 및

□(청약증거금의 별도예치)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

□(증권발행의 취소)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예:90%) 이하인 경우 증권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핵심정보의 제공)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정보는 증권발행인이 인터넷에 게재

□(손해배상책임) 허위·부실공시에 대해서는 발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과

□(증권의 예탁의무) 발행된 증권의 예탁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매도 금지(대주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는 허용)

부록2.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체계

□ (자금 조달) 투자금융 공급은 재정·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연금·공제회, 일반법인 등 민간자금이 일부 참여하는 구조
○ 정부측 출자는 모태펀드가 주요 투자자 기능을 수행하며 일부 지자체, 정책

금융기관, 정부기금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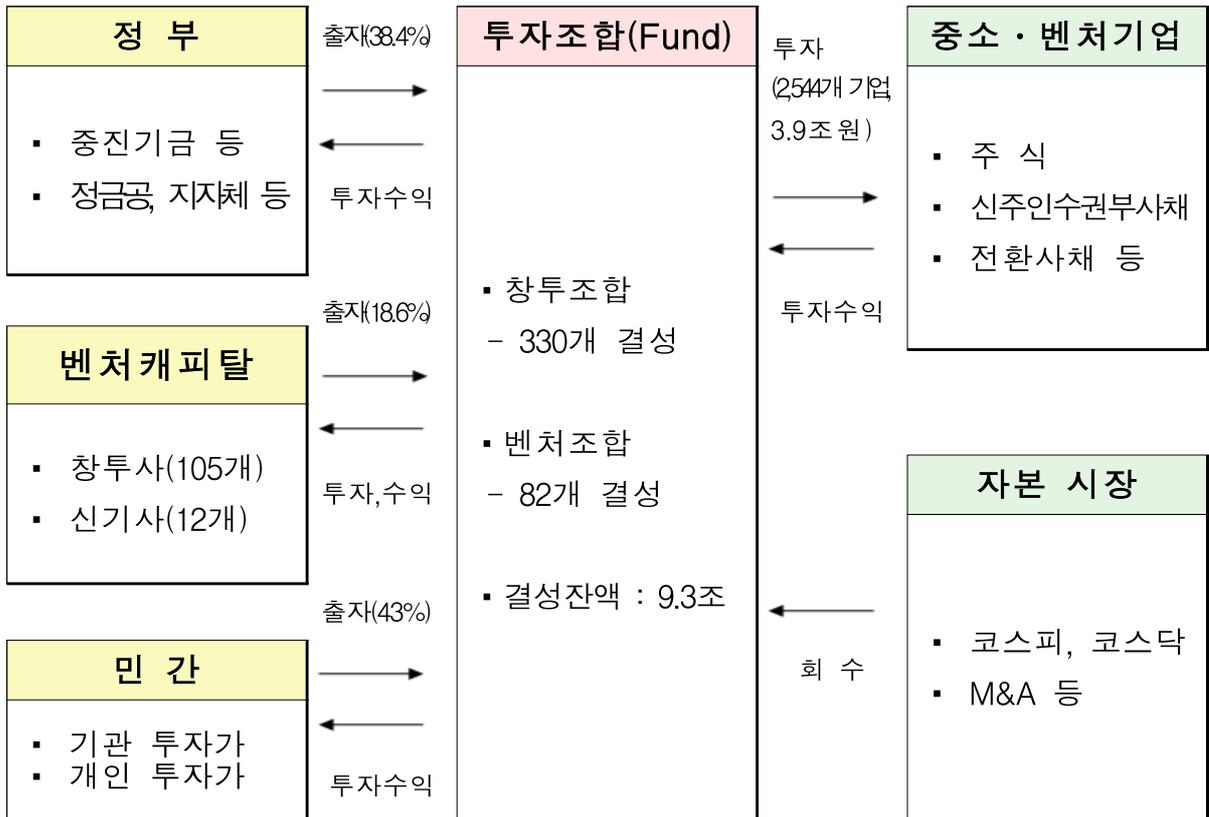
- 민간자금 참여는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과 연금, 공제회, 일반법인 등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작은 규모로 참여

□ (투자 조합) 창투조합(330개)과 벤처조합(82개)이 주요 투자 vehicle로 활용되어 총 412개로 구성('12년 말)

- 조합 결성 총액은 9.3조원으로 조합당 평균결성 총액은 226.9억원

- 투자조합은 주식, CB·BW 등의 방법으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IPO, M&A, 장외매각등으로 투자금을 회수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체계 ('12년 기준) >



부록3. 창업투자회사·조합에 대한 지원제도

□ 조세지원 제도

지원대상	관련규정	지 원 내 용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투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창투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에 ‘14.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창투사 등이 출자로 인해 창업자·벤처기업으로부터 ‘14.12.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14.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받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09.12.31까지 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이 ‘14.12.31까지 창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투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세 원천징수 ◦일몰기일 : ‘14.12.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창투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1과세 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3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 ◦일몰기일 : ‘14.12.31일까지
증권거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투사·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이 ‘14.12.31일까지 창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록세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지역내 창투사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

- 투자실적이 우수하고, 부채비율 등이 낮은 창투사가 운영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재정자금(모태펀드) 출자지원

참고문헌

강유리(2013), 미국의 창업정책 현황 및 시사점: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KISDI 초점 제25권 15호 통권 560호

관계부처합동(201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 엔젤투자 및 M&A
활성화를 중심으로 -

금 융 위 원 회(2013),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2014.1),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세제지원의 활용과 기
대효과

김기완(2011),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벤처확인유형을 중심으로

배영임·표한형·김영태(2012), 벤처생태계의 내실화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벤처기업협회(2012), 「2012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서승원(2008), 벤처캐피탈 경제학 도서출판 글누리

이윤준(2011),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주/염수현/조유리(2013), 벤처창업금융 현황 및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장용석(2006), SBIC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고찰한 기술금융 정책의 이슈와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2011), 선진국 창업·벤처정책 사례

중소기업청(201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설벤처투자정보센터(2013), 벤처캐피탈 업무운용상황
보고